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kip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389-10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간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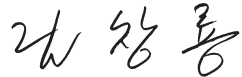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건수 세계 4위 등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간 심사공조 체제를 출범시키고 5개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식재산분야의 당당한 중심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는 지금 지재권전쟁 시대에 돌입해 있으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우리 정부는 지식, 에너지, 환경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우리기업의 강한 특허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최근의 법령 개정사항과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특허청의 새로운 지원사업을 추가한 것 외에도, 고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절차 흐름도 및 삽화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권리별·종류별 서류제출 기간과 민원인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FAQ)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서가 개인 및 중소기업이 고품질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증진하여 경제난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 3.

고객서비스국장 김 창 룡 



특허서비스현장

우리 특허청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지식재산도 소중히 대할 것이며,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 함과 동시에 등록된 권리는 안정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상시혁신체제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1.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내·외의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 고객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밝혀 직원 모두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알리며, 일 잘하는 특허청,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1.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편에서
2.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3.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4.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5.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6.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7. 특허정보는 국가의 자산, 편리하게 이용토록
8. 양질의 서비스는 특허가족의 협조도 한몫

특
허
서
비
스

현
장



Contents

I . 산업재산권 이해의 기초	06
II . 출원전 산업재산권 선행기술 정보검색	08
III . 출원 따라하기	11
IV . 권리별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6
V .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23
VI .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절차	28
VII .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33
VIII .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45
IX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60
X .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78
XI .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99
<별첨 1>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FAQ)	108
<별첨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15
<별첨 3> 산업재산권 서류제출기간	116

주요내용 찾아보기

www.kipo.go.kr

구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수수료		지원사업	
	내 용	면	내 용	면	내 용	면
출원전 단계	산업재산권 선행기술 정보검색 국·내외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출원인 등록(출원인코드 신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p8 p9 p11 p11			※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원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지역 지식재산창출사업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p78 p84 p85 p86
출 원	출원방법 알아보기 출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출원서 제출방법 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p11 p14 p12 p15	출원 수수료	p45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지역 지식재산창출사업	p79 p80 p85
심 사	특허 ·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특허 · 실용신안 출원흐름도 특허 · 실용신안 심사절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p16 p17 p17 p18	심사 청구료	p4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p95
	디자인 출원흐름도 디자인 심사절차 디자인의 특이제도	p19 p19 p20				
	상표의 구분 상표의 특이제도 상표 출원흐름도 상표의 심사절차	p21 p21 p22 p22				
등 록	설정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산업재산권 등록방법 연차등록료 납부 등록절차 흐름도	p24 p25 p26 p27	등록료	p48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특허기술 거래시장 개설	p89 p88 p90 p91
심 판 소 송	심판의 종류 특허 심판 절차 특허 심판과 관련된 절차	p28 p30 p31	심판 청구료	p50	특허법률구조사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p94 p96 p97 p98
PCT 출 원	해외출원 방법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 국제출원흐름도	p32 p35 p36 p40	국제출원 수수료	p53	국제출원등록비용 지원	p81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p54		
Madrid 국 제 상 표	상표해외출원 방법 상표국제출원 유의사항 마드리드 특이제도 마드리드 흐름도	p41 p43 p44 p42	마드리드 출원 수수료	p56	비영어권 수출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p87
별 첨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FAQ)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산업재산권 서류제출기간	p108 p115 p116				

I . 산업재산권 이해의 기초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4개 권리를 총칭하며,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산물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됨
- 산업재산권제도는 새로운 기술, 디자인 및 네이밍 등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여 모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인센티브 부여 및 상거래상의 신용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



2. 산업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신용창출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가능

■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지원자금 활용 가능

※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 : p78~p98 참조



3.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존속기간

■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존속기간

종 류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상 표
정 의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서 발 명수준이 고도한 것(대발명)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 용 성 있는 고 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호 대상	발명	물품의 구조 및 형상에 관한 고안	물품의 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마크(브랜드)
존속 기간	설 정 등 록 일 로부터 출원 일 후 20년(의약품은 5년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	설 정 등 록 일 로부터 출원 일 후 10년(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 정 등 록 일 로부터 15년	설 정 등 록 일 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산업재산 4권의 개념도(예시)



Ⅱ. 출원전 산업재산권 선행기술 정보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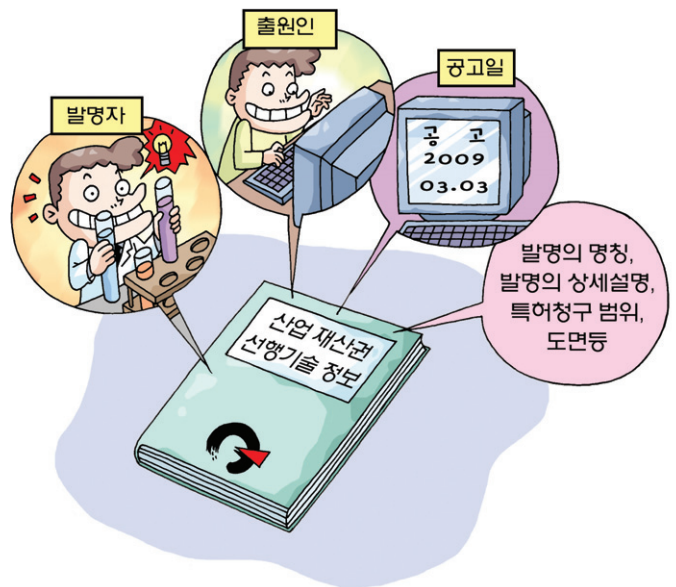
1. 산업재산권 선행기술 정보

■ 산업재산권에 관한 선행기술 정보란?

- 검색일 기준으로 출원·등록된 발명의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및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의 출원정보와 등록정보 등이 게재된 자료

■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

산업재산권 정보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동향), 권리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2. 산업재산권 선행기술 검색은 이곳에서

■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 주요국가의 특허정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특허 고객 등에게 열람, 복사, 검색서비스 제공
- 방문,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한 자료복사 신청
 -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 (042) 481-5124, FAX(042) 472-3462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특허청
 - 서울사무소 열람실 : (02) 568-6221, FAX(02) 557-8414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빌딩 4~5층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 열람실(별첨2, p115 참조)

■ Internet 이용 국·내외 특허정보검색

- 국내특허검색사이트

기 관	주 소	구 분
한국특허정보원 (KIPI)	http://www.kipris.or.kr	무 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http://www.yeskisti.net/yesKISTI/InfoSearch/DetailSearch03.jsp	무 료
유플스(WIPS)	국·내외 특허 검색 : http://search.wips.co.kr/ 국내 디자인 검색 : http://design.wips.co.kr/	유 료
쥬테크놀러지 [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유 료

● 해외특허검색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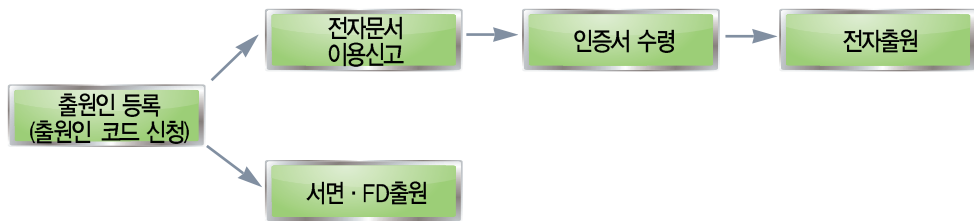
기 관	주 소	구 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 http://www.wipo.int/pctdb/en/ 국제상표: http://www.wipo.int/ipdl/en/search/madrid/search-struct.jsp 디자인: http://www.wipo.int/ipdl/en/search/hague/search-struct.jsp	무 료
미국특허청 (USPTO)	특허: http://www.uspto.gov/patft/index.html 상표: http://www.uspto.gov/main/trademarks.htm	무 료
유럽특허청 (EPO)	Esp@cenet: http://ep.espacenet.com/quickSearch?locale=en_EP	무 료
유럽상표청 (OHIM)	상표: http://cami.europa.eu/CTMOnline/RequestManager/de_SearchBasic?transition=start&source=Log-in.html&language=en&application=CTMOnline 디자인: http://cami.europa.eu/RCDOnline/RequestManager	무 료
일본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IPDL)	www.ipdl.inpit.go.jp	무 료
호주특허청	특허: http://perides.ipaustralia.gov.au/ols/auspat/ 상표: http://perides.ipaustralia.gov.au/atmoss/falcon/application_start 디자인: http://perides.ipaustralia.gov.au/adds2/adds/adds_simple_search.paint_simple_search	무 료
중국 특허청	특허: http://ersearch.sipo.gov.cn/sipoensearch/search/tabSearch.do?method=init	무 료
영국 특허청	특허: http://www.ipo.gov.uk/patent/p-find/p-find-number.htm 상표: http://www.ipo.gov.uk/tm/t-find/t-find-number.htm 디자인: http://www.ipo.gov.uk/design/chfind/d-find-number.htm	무 료
러시아 특허청	특허/상표/디자인: http://www.fips.ru/ensite/	무 료
Questel	QPAT: http://www.qpat.com/index.htm	유 료
Delphion	www.delphion.com	유 료
Patolis	www.patolis.co.jp	유 료
STO	www.bustpatents.com	유 료
DERWENT	www.derwent.co.uk	유 료
Dialog Web	www.dialogweb.com	유 료
THOMSON REUTERS	www.micropat.com/static/index.htm	유 료

Ⅲ. 출원 따라하기



1. 출원서 작성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 출원전 단계 흐름도



■ 출원인(대리인)등록(특허법 제28조의2,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 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 부여신청(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또는 서명 사용(미기재시 반려)

■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제28조의4,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 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 신고 없이도 가능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출원인코드 부여와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승인된 후에는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 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다운받아 특허전자출원 진행



2. 출원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누가 출원할 수 있나?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도 출원이 가능한가?

외국인도 가능. 다만, 외국인(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특허법 제5조)

■ 출원일자는 언제인가?

산업재산권은 동일한 발명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므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

- 전자출원의 경우 서류제출을 클릭한 날이 출원일이고, 직접 제출한 경우는 특허청 제출일이, 우편접수의 경우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출원일이 됨(단, PCT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 어떻게 출원서류를 제출하나?

- 전자출원(온라인 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 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Ⅲ. 출원 따라하기

-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플로피 디스크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평 일 ·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 공휴일	09:00 ~ 21:00

- 서면출원(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www.kipo.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민원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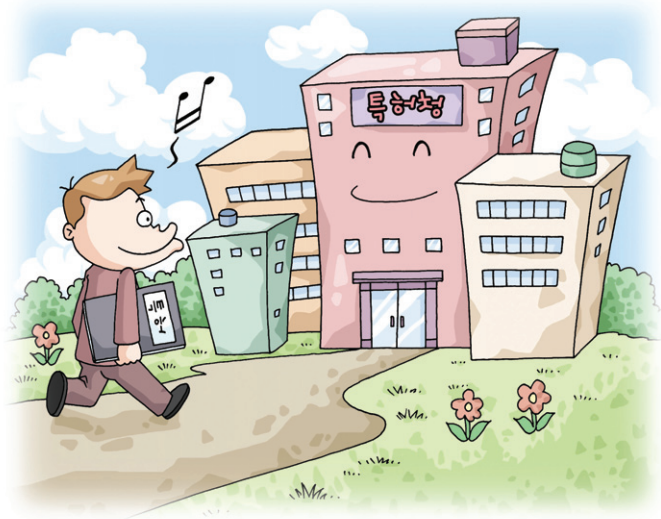
- 방문제출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13:00)

- 우편을 통한 제출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구분		권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자문서출원	ON-LINE	1.출원서:1통 2.요약서, 명세서, 도면:각 1통 ※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1.출원서:1통 2.도면(또는 사진, 견본을 제출할 경우 견본, 사진을 첨부):1통	1.출원서:1통 2.상표견본:1통(가로 세로 각각 8cm 이내) *출원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 3.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 한하며(입체적 형상상표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제출 가능), 출원서의 “상표설명”란에 기재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FD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시)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등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고객센터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장소는 별첨2 참조)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Download 가능

- www.kipo.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민원서식

Ⅲ. 출원 따라하기

■ 출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 발명이 물품(기계, 가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 첨부
- 특허·실용신안의 권리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
-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범위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정상품으로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어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은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원업무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청 출원서비스과 ☎ 042) 481-5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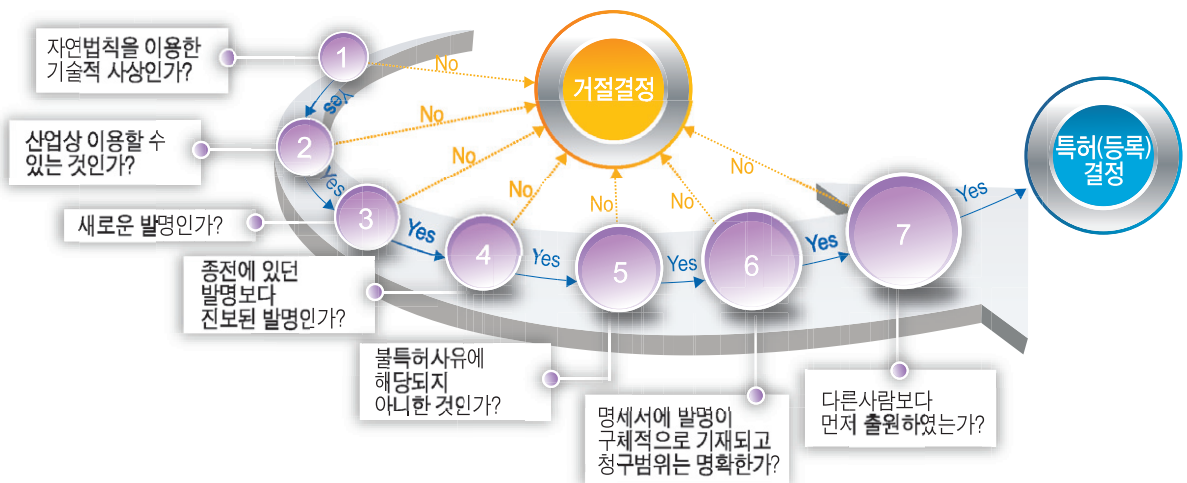


IV. 권리별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 특허·실용신안(2006.10.1 이후 출원) 심사절차

■ 특허·실용신안등록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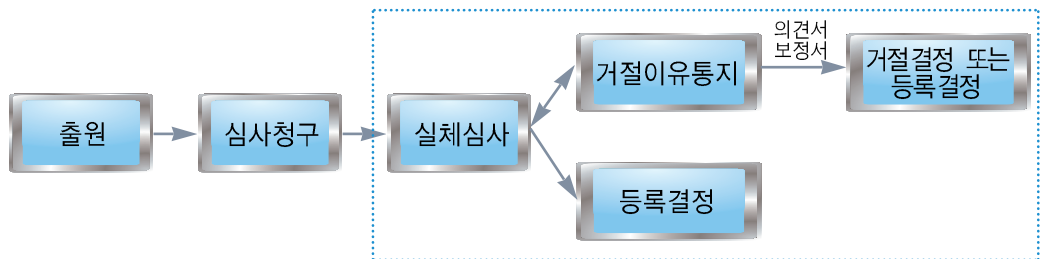


※ 특허(등록)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심사절차

- 특허 · 실용신안 출원 흐름도



●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고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흠이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흠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효처분 함.

● 출원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

※ 정보제출 :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계속 중이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고안)이 특허(등록결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실체심사

- 심사결과 심사관은 특허(등록)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 통지(최초 거절이유통지,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

● 등록공고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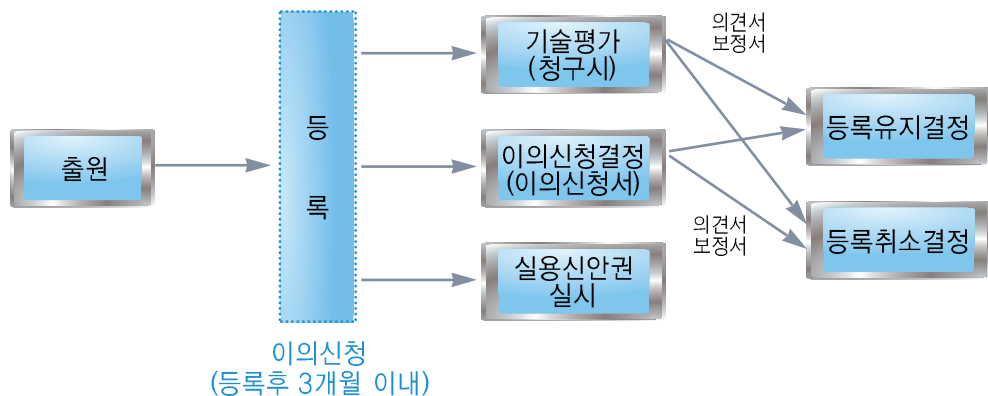
● 무효심판

-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 가능
- 등록공고일 후 3월 경과 후에는 이해관계인만 무효심판 청구가능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7.1~2006.9.30인 경우) 및 심사절차

■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 흐름도



■ 선등록제도

-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는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 결정을 받아야 함
-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2006. 10. 1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출원과 선등록제도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에 대한 기술평가제도는 계속 적용됨

■ 기술평가제도

- 실제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함(청구항별로 가능)
-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자에게 기술평가 의견제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의견서 또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심판청구 가능

IV. 권리별 심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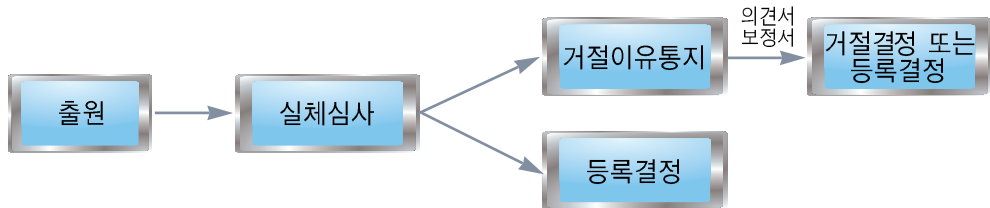
어떻게 진행되나?



3. 디자인 심사절차 및 제도

■ 디자인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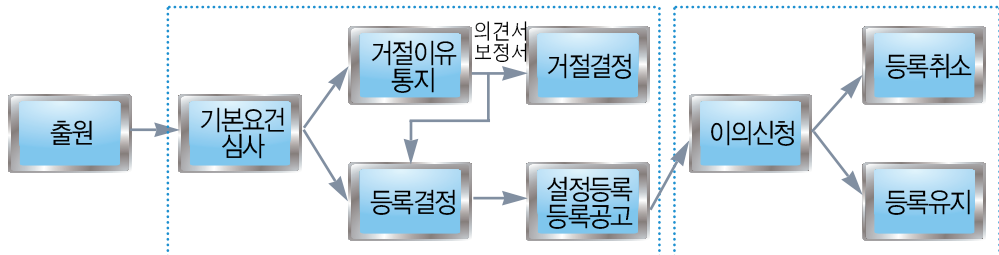
- 디자인 심사출원 흐름도



- 디자인 심사절차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함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하고 이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함

- 디자인 무심사출원 흐름도



- 디자인 무심사절차

- 디자인 무심사 품목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위한 기본요건 및 창작이 쉬운것(용이 창작)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함
-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 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한별 물품디자인제도

2이상의 물품이 한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별의 차 세트, 한별의 껌연 용구세트 등 법정 31개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 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벽지,합성수지 등과 같이 Life cycle이 짧거나 계절상품인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에 한하여 20개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디자인보호법 제2조)하여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규정

IV. 권리별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4. 상표 심사절차 및 제도 알아보기

■ 상표의 구분

구 분	상 표	서 비 스 표	업 무 표 장	단 체 표 장
정 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 등에 사용)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업, 금융업, 요식업 등에 사용)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사 례				
등록번호	40-0208349	41-0018379	42-0000864	43-0000172
권리자	현대자동차(주)	하나은행	양양군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 다류1출원제도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상품분류상 2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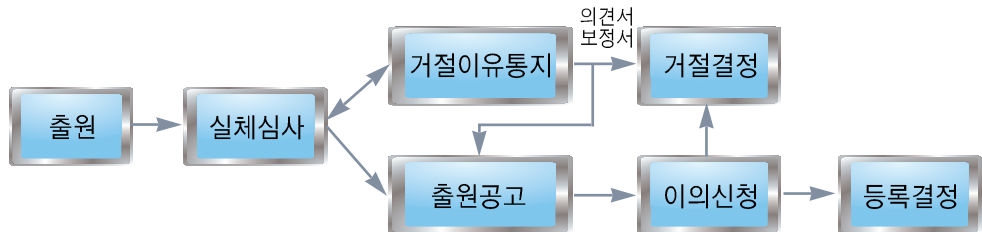
-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의 존속기간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음
-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늦어도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음(양양송이, 진도홍주, 이천한우, 경산대추, 한산모시 등)

■ 상표 심사절차

- 상표 심사 흐름도



● 출원공고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등록전에 출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일반인에게 심사의 협력을 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완전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

● 이의신청

-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심사관은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3자의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결정



V.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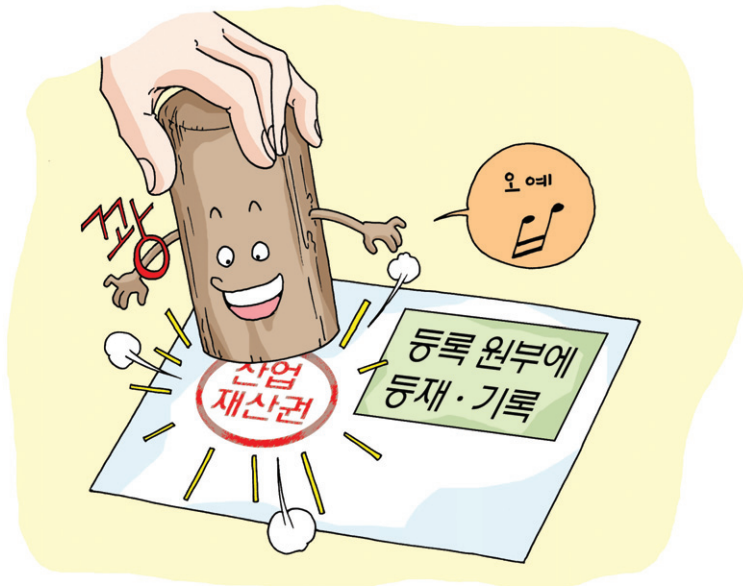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위

■ 등록의 효력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 승계는 제외)임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설정도 가능





2.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주요 불수리 사유

■ 설정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

-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감면 대상자는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개인은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을 제출)
- 이전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양도인의 인감날인 및 양도증(인지세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 납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회사합병인 경우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공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동의서에 동의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서 또는 허락서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서(동의서에 등록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신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인감증명서 기간 경과(발급일로부터 6개월)
 - 등록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
 - 인감증명서와 신청서 인감날인 상이

V.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오기제 및 연차등록료 중복납부 등

- 등록번호 오기제 및 기본디자인이 소멸된 경우

※ 등록신청서에 불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 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멸기회 부여

※ 소멸예고안내서의 연차등록료 납입고지서에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3. 산업재산권 등록방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최초등록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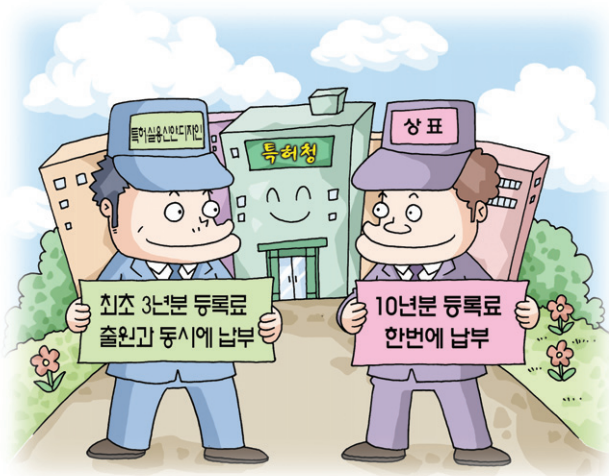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면제·감면 대상자, 일부청구항(디자인)포기 등으로 납입고지서의 금액과 상이해진 경우 등록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내

-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일단 소멸되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 상표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10년분 등록료를 한번에 금융기관에 납부
- 상표등록에는 추가납부기간은 없지만 납부기간내 1회에 한해 등록료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연장 가능(단, 기간 연장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

- 특허, 실용 신안(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된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매년분의 특허 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
-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내
 -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권리자가 등록료를 납부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정상납부기간 만료 2월전에 우편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예고 안내서비스 제공
- 실용 신안 선등록(출원일이 1999. 7. 1~2006. 9. 30 인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내
 -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년차분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4년차 등록료부터는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와 동일)
- 상표 갱신등록료 납부
 -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갱신출원 신청(9~10년 사이에)을 하여야 함
 - 존속기간 내에 상표권 갱신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을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갱신등록료 납부

※ 특허(등록)료의 보전(補填)제도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납부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함

V.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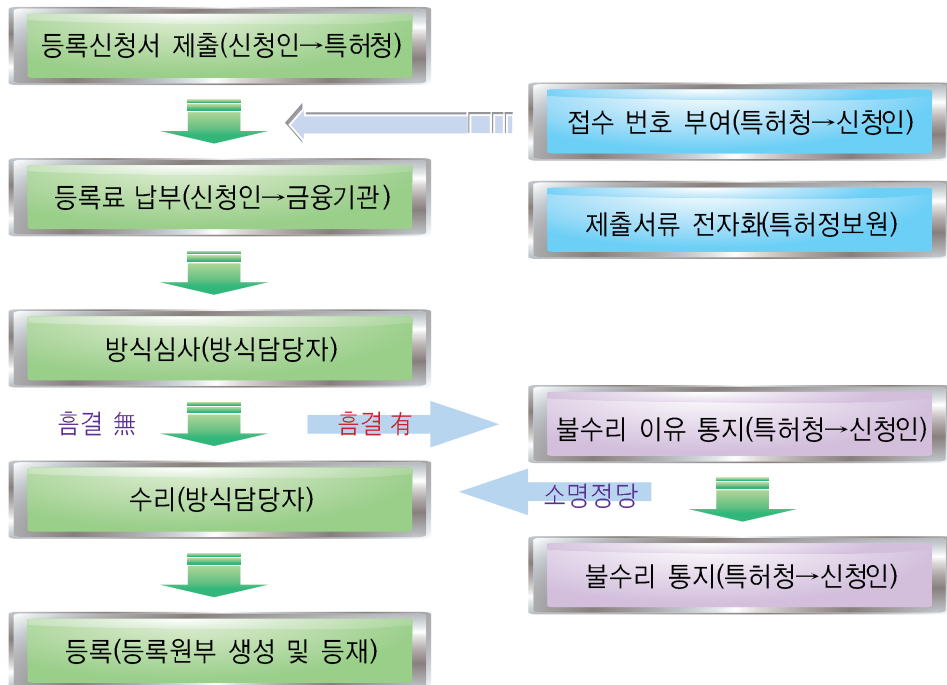
※ 소멸권리 회복제도(특허법 제81조의 3 제3항, 특허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 인지세(국세), 등록세(지방세) 및 특허(등록)료 통합징수제도

산업재산권 설정등록 및 권리이전 등록신청시 인지세, 등록세 및 특허(등록)료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제도(2009. 1. 1시행)

■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흐름도



■ 등록업무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청 등록서비스과 ☎ 042) 481-5247

VI.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절차



1. 특허분쟁 심판은 특허청에서...

■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소송의 절차

- 심판관이 행한 거절결정처분에 불복하거나(결정계 심판)
- 그 처분에 의해 설정된 산업재산권의 등록무효 등 당사자 간의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당사자계 심판)



2. 특허심판의 종류

■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불복한 경우에 그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

심 판 의 종 류	내 용	청 구 기 간	관 련 규 정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거 절 결 정 등 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132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상표법 제70조의2
보정각하 불복심판 (디자인, 상표) ※특허·실용신안: 보정 각하결정 불복심판 폐지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심판관이 보정을 각하결정하였을 경우에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 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70조의3
정정심판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된 이후 등록권자 스스로가 자기의 특허 발명의 명세서,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권리설정 등록 후에 만 청구가능(소멸 후에도 가능)	특허법 제136조

■ 당사자제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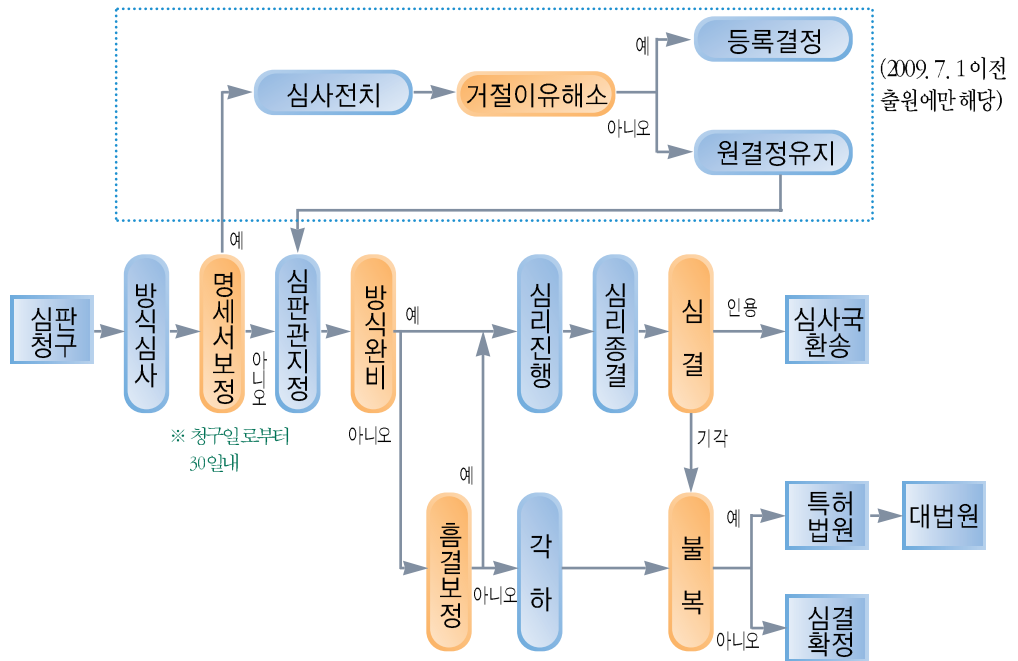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 판 의 종 류	내 용	청 구 기 간	관 련 규 정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된 권리를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등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 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자·전용실시권자(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권리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권리존속 중(판례)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등록무효사유는 없으나, (불사용,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시 그 상표권을 장래에 향하여소멸 시켜 줄 것을 구하는 심판	해당 취소 사유의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 기간을 갖는 것이 원칙	상표법 제73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 등이 선행 타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 허여를 청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 중에 만 청구가능 (현존 권리 간 실시상 저촉해결 목적)	특허법 제138조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0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43조



3.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는 특허·실용·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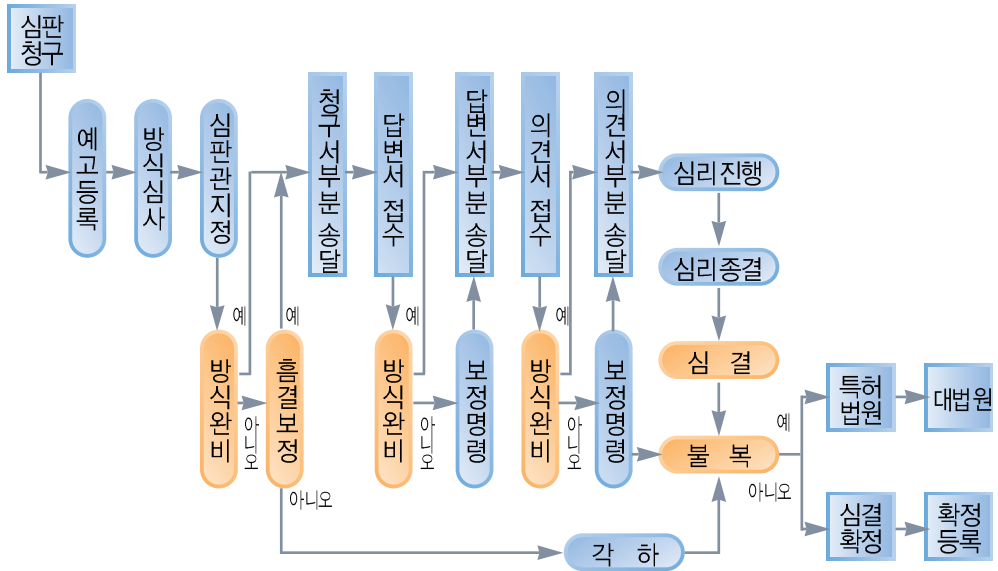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룰 수 있음

Ⅵ.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절차

■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4. 특허심판과 관련된 절차

■ 주소·명의 변경 등의 신고

심판계속 중에 특허권의 이전이 있거나 심판관련인의 명의 또는 주소·명칭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처	사 용 서 식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인 경우	특허청 등록서비스과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특허권 이전의 경우)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가 아닌 경우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우선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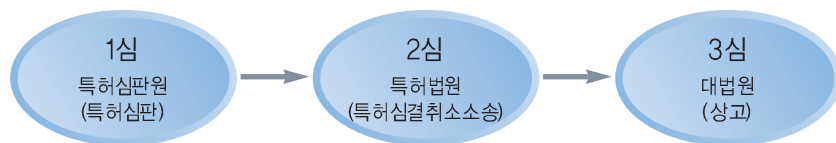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등 우선심판이 필요한 사건과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심판사건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우선심판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우선심판 절차(평균 처리기간 6개월)에 의해 처리됨

■ 신속심판(2009년 7월 1일 시행)

법원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양방 당사자가 신속심판 동의서를 제출한 사건은 신속심판 절차(평균 처리기간 4개월)에 의해 처리됨

■ 특허쟁송의 해결단계는?

특허관련사건(발생, 변경, 소멸 및 권리범위)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음



- 특허소송 청구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 특허관련 침해소송(민사, 형사) 손해배상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 심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 481-5918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PCT 국제출원이란?

■ PCT 국제출원제도란?

PCT(특 허 협 력 조 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2009년 2월 현재 139개국 가입)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 2004. 1. 1 이후의 출원부터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의 제출로서 국제출원일 시점의 모든 PCT 계약국의 지정을 구성



■ 해외출원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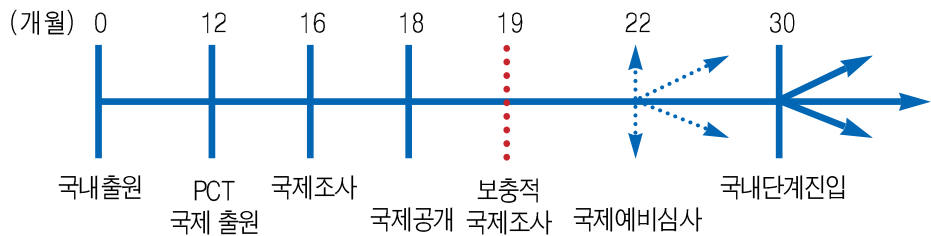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함.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제출일을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음



■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 출원일과 관련하여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 PCT 국제출원서 작성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므로 출원서류 작성 용이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 특허획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방지

■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PEA)
출원된 발명의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 국제조사는 필수절차이나 국제예비조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특허청)
-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의 특허청
-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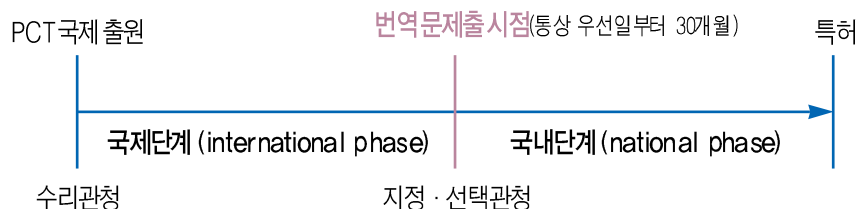
■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PCT 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계(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각 지정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함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
-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으로 보호가능(디자인·상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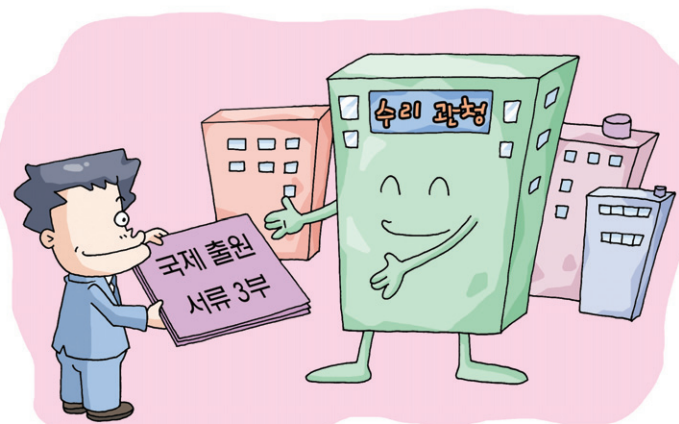
■ PCT국제출원 절차

-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와 국내단계(national phase)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절차' 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절차' 라 한다.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 제출

- 국제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배부처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PCT 홈페이지(www.pct.go.kr), WIPO 홈페이지(www.wipo.int/pct/en)
- 국제출원서 접수처(수리관청) :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
-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경우 도면, 요약서, 서열목록, 수수료계산서, 위임장
 - ※ 유전공학 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FD 등)를 같이 제출
 - 우선권증명서류 : 1부
 -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송달신청



- 제출방법
 - 서면출원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원본 제출
 - PCT-SAFE를 이용한 출원
 - ▶ PCT-SAFE EASY MODE에 의한 출원
 - ▶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 ※ PCT-SAFE에 의한 출원서 작성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특허路」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PCT) 전자출원 교육자료 참조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국제출원의 시기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
- PCT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 PCT 국제출원 수수료의 종류 :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가 있으며, 이외에도 우선권서류송달료 등 추후 절차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음
 - 납부 방법 : 필수 수수료인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는 동 수수료의 총합 금액을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
 - 수수료 미납시의 처리 :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가 발송 되고 그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일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출원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형식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며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호주
-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하여야 함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진입 기간(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여야 함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2009년 2월 1일 현재)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 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제출기한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단, 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 수수료 납부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개정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까지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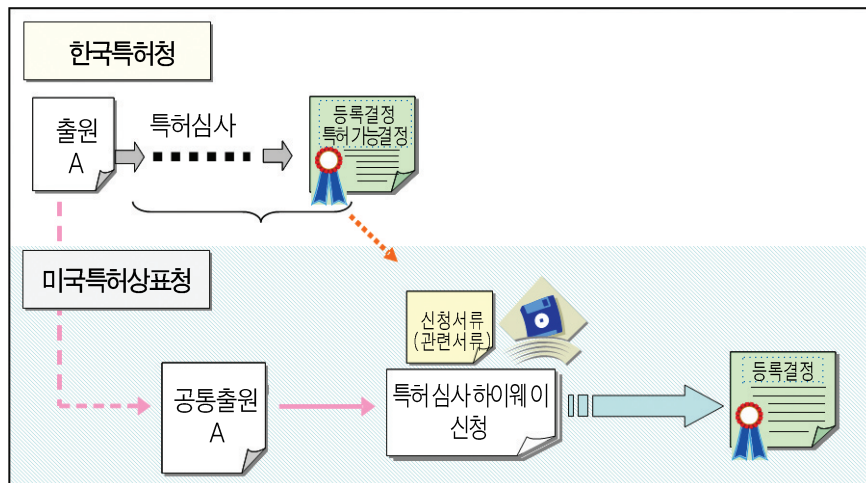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특허심사하이웨이란?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한·미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예시〉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효과

-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해외에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
- 특허청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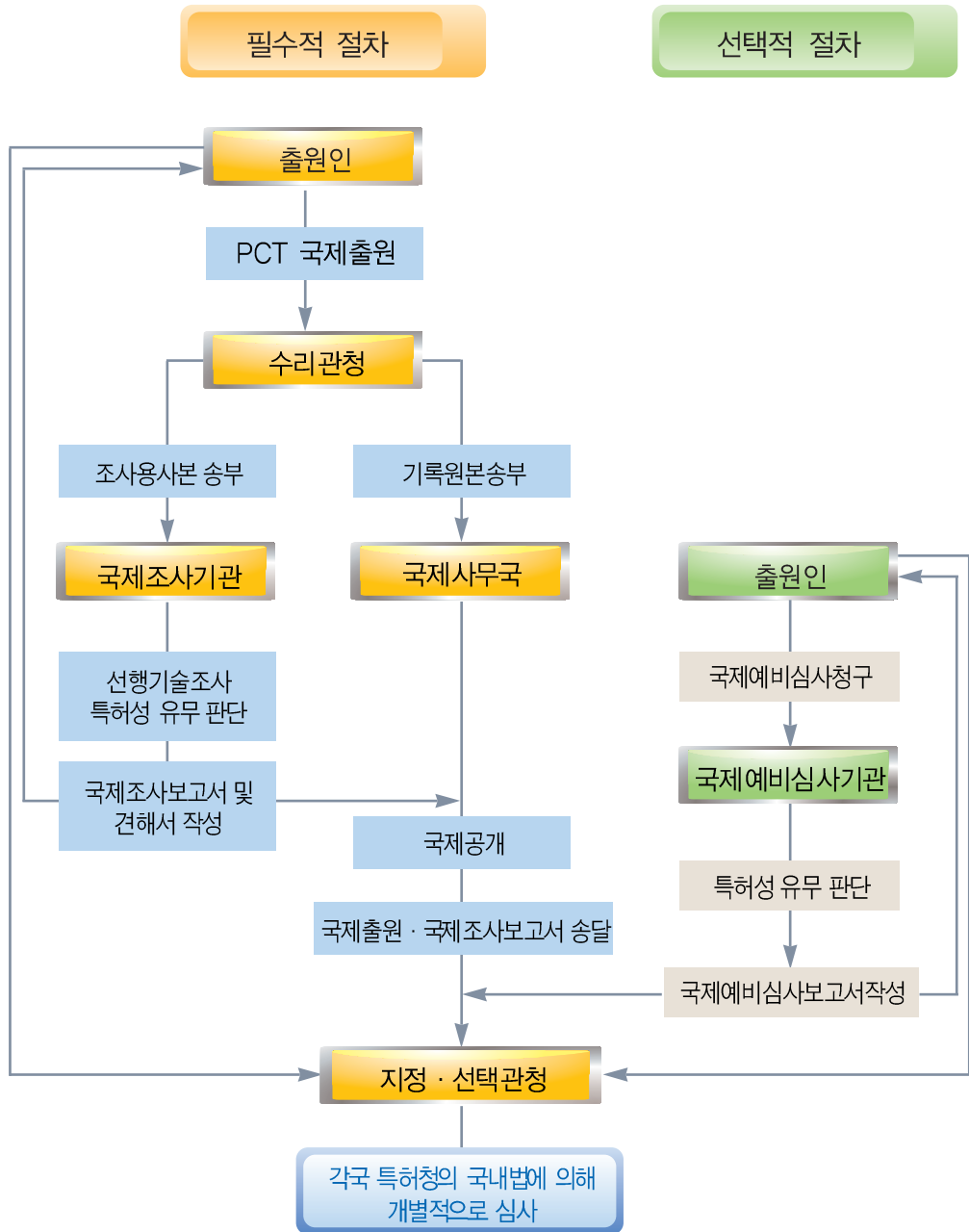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2007. 4. 1), 미국(2009. 1. 28)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며 덴마크와도 2009년 3월부터 시범 실시 중

- 특허심사하이웨이 관련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지원과 ☎ 042) 481-5970

■ 절차별 흐름도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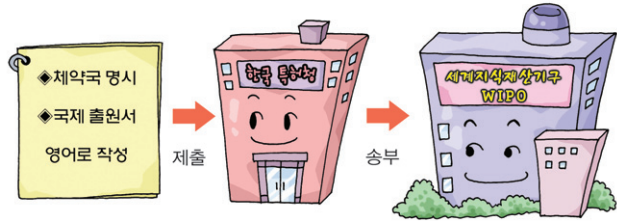


2. 해외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방법?

■ 상표의 해외출원방법은?

● 전통적인 출원방법

-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각 국별로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 각국의 국내상표법에 따라 절차진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출원하는 경우 자국대리인을 선임토록 요구하고 있음
- 상표등록 후의 사후관리(주소변경, 존속기간 갱신, 명의변경 등)도 각 국별로 따로 처리 하여야 함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방법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가맹국간에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신청인이 선택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한국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기초로 계약국(지정국)을 명시 하여,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한 후 한국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출원
- 국제사무국은 기초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국제등록부에 등록 후 각 지정국에 출원인의 출원서를 송부
- 지정통보를 받은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점

- 본국관청에 제출된1건의 출원서로 여러나라에서 동일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 가거절통지가 접수된 경우에만 해당국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경비절감
-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계약국을 새롭게 지정 가능

■ 마드리드국제출원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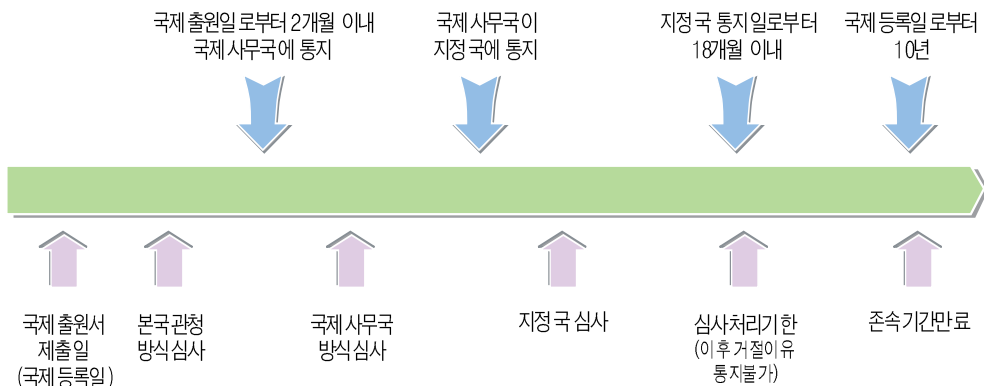
-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출원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이 된 이후 각 지정국에 상표가 출원되었음을 통보하고 각 지정국은 이때부터 심사를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등록상표(기초등록)가 있어야만 국제출원 가능
-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특허청
-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 마드리드국제출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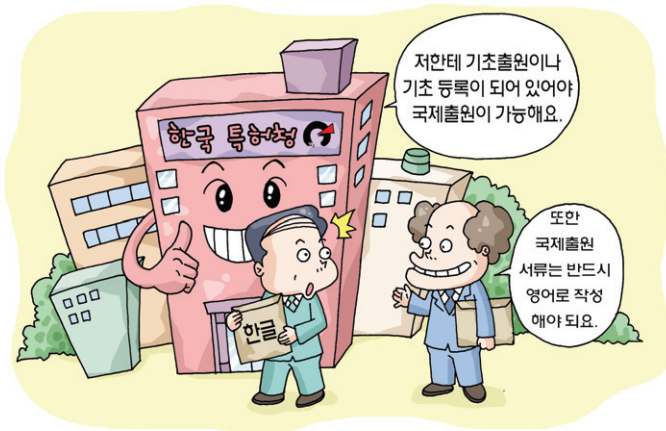
VII.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마드리드국제출원 서류의 작성·제출 방법

-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MM2) 1부(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
※ 위 서식은 특허청 마드리드 홈페이지(www.madrid.go.kr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마드리드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한국 특허청에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되어 있어야 국제출원 가능
- 국제출원인은 기초출원·등록인과 동일인이어야 함
- 국제출원시의 표장은 기초출원·등록의 표장과 동일해야 함(변형 불가)
-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지정상품(서비스)은 기초출원·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이내여야 함
- 우리나라는 영어를 선택하였으므로 국제출원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동일 여부, 표장의 동일 여부 및 기초출원·등록의 범위내 지정상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함



■ 마드리드국제출원의 특이제도

- 국제등록의 종속성

기초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절, 포기, 무효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에 의해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 지정국에서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 상실하게 됨

-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집중공격)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기초출원(등록)을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 PCT·마드리드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 481-5198
- 특허청 특허심사지원과 ☎ 042) 481-8145
- 특허청 국제상표심사팀 ☎ 042) 481-8315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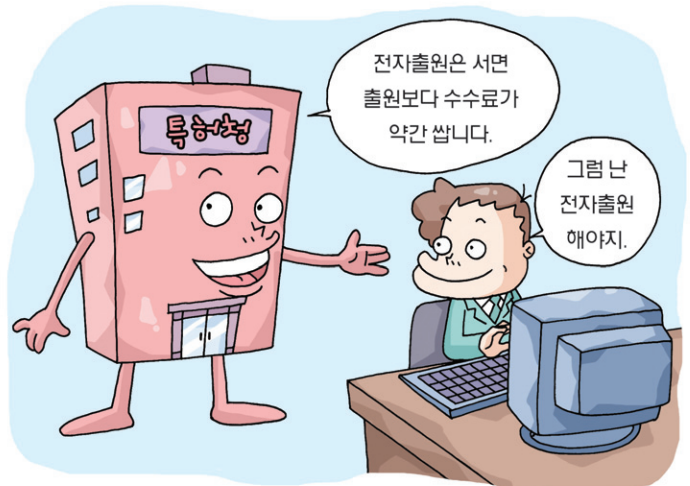
1. 출원서와 함께 납부하는 수수료

■ 출원수수료

(2009. 1. 기준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

구분 \ 권리		특 허 ★	실용신안 ★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전자출원 * (온라인, FD)		38,000원	17,000원	60,000원	1 디자인마다 45,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갱신 추납 85,000원)
서면 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1 디자인마다 55,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갱신 추납 95,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 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가산명세서·도면· 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없 음	없 음	없 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 신청료

구분	권리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우선권 주장	신청료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추가료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심사 청구료 ★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7,000원을 가산	없 음	없 음	없 음
우선심사 신청료		167,000원	86,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 4. 1 이후 가능

※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특허 26,000원, 실용신안 17,000원, 디자인 16,000원, 상표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원을 제외하고 반환신청시 수수료 반환됨

■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 ↔ 실용신안: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서비스표: 매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 경우: 25,000원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1999. 7. 1~2006. 9. 30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매건 86,000원
- 가산료: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전본 등)
 -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000원
 -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3,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 7. 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 변경: 매건 10,000원
 - 무심사 → 심사 변경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은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3,000원, 서면: 13,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매건 3,000원(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서면 제출: 매건 13,000원(단, 보정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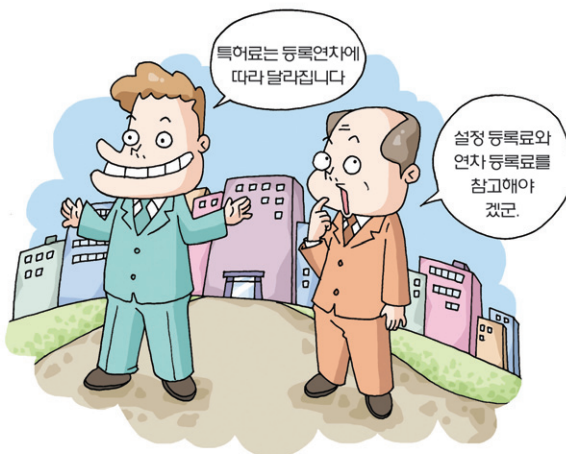
■ 기타 수수료

- 보완료(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매건 10,000원
- 출원인 변경 신고료: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6,500원(2006. 5. 1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20,000원, 2회: 30,000원, 3회: 60,000원, 4회: 120,000원, 5회 이상: 240,000원
-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매건 24,000원
- 이의신청료: 매건 11,000원



2. 특허(등록)료 (2009. 1. 1. 기준)

구분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 차 등 록 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 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 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 자 인	심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상 표	상표(서비스표)		211,000원	* 다류 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256,000원	* 상표 설정등록시 지방세 4,500원 추가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포함)
 - 특허 66,800원, 실용 53,800원, 디자인 53,800원, 상표 126,8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21,2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 매건 24,800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 면제(상표 제외)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 매건 14,000원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료
 - 전용 실시권 · 사용권 : 매건 72,000원, 통상 실시권 · 사용권 :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 · 변경(행정구역 · 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경정 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 ·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3.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 심판청구료

(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중소기업 : 70% 감면
전담조직 : 50% 감면)

구분	권리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 문서 제출	기본료	매건 150,000원	매건 200,000 원	1디자인마다 240,000 원	매건 200,000 원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 제출	기본료	매건 170,000원	매건 220,000 원	1디자인마다 260,000 원	매건 220,000 원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1항마다 15,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270,000원

※ 무효심판 청구료 : 매건 11,000원

- 특허 : 2006. 10. 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 10. 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 기타 청구(신청)료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26,000원), 서면 제출(매건 36,000원)
 - 심판 · 재심청구 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은 매건 3,000원, 서면제출은 매건 13,000원



4.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교부신청료 등

■ 각종 신청료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 · 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매건 500원(온라인 신청 · 수령시 무료)
- 출원 · 등록 · 이의신청 · 심판 ·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료 (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료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매면 100원
 - 모사전송 수령 (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매건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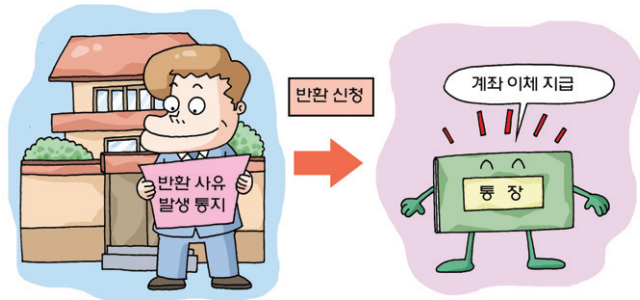
5.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 출원료·등록료·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http://www.giro.or.kr>) 납부
- 우편으로 등록료납부시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우편발송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 납부자번호)만으로도 국고수납은행에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 과·오납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

- 반환사유발생 통지
반환 등의 사유발생시 납부자에게 과·오납, 무효심결확정 등록 사실을 통보
- 납부자등의 반환신청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서에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반환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2) 481-5909



■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청 고객센터서비스과 ☎(042) 481-5255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6. PCT 국제출원 납부수수료는 ?

■ 국제출원 수수료

(2009. 1 기준)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 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27,000	국내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5,000		
조 사 료	한 국	국어 : 450,000 영어 : 900,000		
	오스트리아	306,000		
	호 주	1,590,000		
	일 본	1,331,000		
송 달 료		45,000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지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100,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299,000원

■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출원과
	취급료	157,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200	송금은행 : Österreichische Posts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21		
일 본	심사료	JPY 3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u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19,600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특허청
 - 전화 : (43-1) 53424-0
 - 팩스 : (43-1) 53425-200
 - 일본(JP) 특허청
 - 전화 : (81-3) 3592-1308
 - 팩스 : (81-3) 3501-6803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균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PCT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 481-5198



7. 마드리드 국제출원 납부수수료

■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기초출원(등록)과 국제출원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심사 비용 등을 징수함
국제출원 신청 수수료의 경우 : 전자문서(5,000원), 서면(15,000원)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납부(마드리드 국제출원은 PCT 국제출원과 달리 한국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음)

■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구 분	기본수수료(A)		개별수수료(B)	비개별수수료(C)
국제출원 (총액=A+B+C)	▷표장의 색채여부 구분	▶색채 : 903CHF ▶흑백 : 653CHF	▷개별수수료 징수 선언국 (35개국)만 적용 ▷개별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	▷개별수수료 미선언국에 적용 ▷비개별수수료 = 추가수수료+보충수수료
사후지정 신청 (총액=A+B+C)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300CHF	※개별수수료 예시 ▶한국 : 류수×233CHF ▶미국 : 류수×337CHF	▶추가수수료:3개류 초과 1류당 100CHF (3개류까지는 무료) ▶보충수수료: 1지정국당 100CHF
존속기간갱신 신청 (총액=A+B+C)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653CHF	※개별수수료 예시 ▶한국 : 류수×266CHF ▶미국 : 류수×415CHF	※ 사후지정 신청의 경우 보충수수료만 계산하고 추가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음
명의변경 신청	▷명의이전내용이 전부·일부 불문, 개별수수료 선언국 불문 ▶매건당 177CHF			

- 개별수수료는 변동되므로 실시간 정보는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export/sites/www/madrid/en/fees/doc/individ.doc>)를 참조
- 마드리드 국제출원수수료의 자세사항은 마드리드전용홈페이지(www.madrid.go.kr 국제출원절차-수수료계산 및 납부방법) 참조

■ 마드리드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 481-5198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8. 출원료등의 면제 및 감면

■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 상표는 면제·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은 반드시 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등록시에 면제·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2009. 1. 1. 기준)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대학원생 제외) - 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재학증명서
5. 만19세 미만인자		없음

※ 유의사항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 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출원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은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 건은 제외)

■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3.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유의사항

1. 적극적권리범 위확인심판청구료는 개인, 소기업,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70% 감면(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생략 가능

VIII. 수수료 종류 및 납부요령

■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 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 청구료에 한함	● 대기업은 사업자등록증사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및 단체 · 국가 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받거나 출연 받은 법인 및 단체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해당 증명서류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법인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서류 등
3.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7년 7월 1일 이후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하면 제출 생략 가능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 출원인이 알아야 할 기본정보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가 기재됨
-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했을 경우와 방문출원일 경우에는 즉시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 출원인(대리인) 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서명·인감,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경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 출원건과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가 일괄 변경됨
- www.kipo.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민원서식

■ 포괄위임등록(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 위임등록 번호를 부여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2. 출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 특허(실용신안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

-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실용신안)를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미국)
-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날짜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날짜 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 제36조2항)
-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특허 및 실용신안)

나. 신규성

- 신규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디자인)출원시(시·분·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2006. 9.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 ※ 종래발명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지 등은 특허거절 이유에서 제외함

- 대 상

- 2006. 3.3 이후 출원 : 공지에의 대상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로 확대
- 2006. 3.2 이전 출원 : 공지에의 대상을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출원일과 무관하게 공지에의 대상에 포함됨

- 요 건

-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예외)

다. 진보성

- 진보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여부

■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속지주의)

-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 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요건

-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 발명의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것

※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짐

■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가.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 제18조)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선출원일로 소급함
- 분할출원 가능기간
 - 2009.7.1. 이전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하는 경우 :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단,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9.7.1. 이후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하는 경우 :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단,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내

나. 변경출원(특허와 실용신안간 : 특허법 제53조 · 실용신안법 제10조(2006.10.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부터), 디자인보호법 제20조(2005.6.30이전 출원에 한함), 상표법 제19조)

- 대 상 :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 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
- 효 과 :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기 간 : 변경출원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 출원보정

● 보정서 종류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의한 보정: 특허청이 보정 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특허청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 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2005. 7. 1 이후)



● 보정서 제출시주의점

-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출원 (2001.6.30. 이전)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최초의 명세서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경과후 -심사청구와 동시에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특허출원 (’01.7.1.~’09.6.30) · 실용신안등록출원 (’06.10.1.~’09.6.30)	- 자진보정기간 &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 자진보정기간: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간(다만, 거절이유통지를 없이 곧바로 특허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송달 전까지 기간, 이하 “자진보정기간”이라 함)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보정가능(이하 “신규사항추가금지”라 함)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일부터 30일 - 보정가능 범위 -신규사항 추가금지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만 가능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을 것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
특허 (2009.7.1 이후) · 실용신안 (2009.7.1 이후)	- 자진보정기간 &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신규사항 추가금지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만 가능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 ㄹ.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 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등을 하는 경우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권리별	보정기간
디자인	-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표	- 출원공고 결정전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원공고 결정후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청구제도

-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 10. 1 출원부터)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순서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
- 심사청구인 및 기간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 심사청구기간

특 허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 · 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 청구시 취하간주
 - 심사청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취하불가
 -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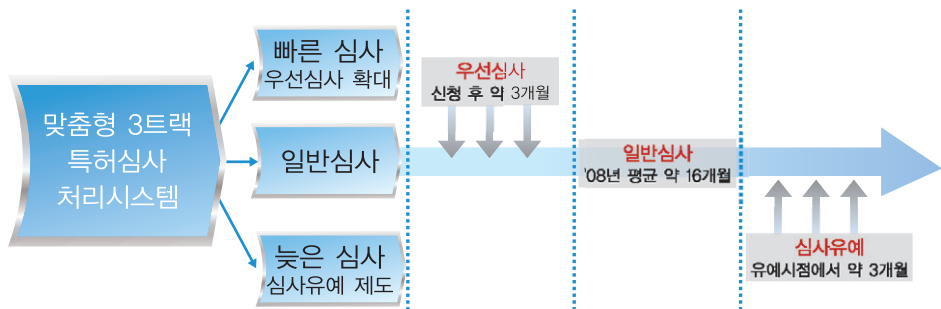
- 통상적인 심사처리기간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통지까지 평균 16개월('08년 기준) 정도
디자인	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7~8월
	무심사등록출원 : 출원일로부터 약 3월정도
상 표	출원일로부터 7~8월

■ 맞춤형 3트랙(빠른/일반/늦은) 특허심사제도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란?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주요내용
 - (빠른심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확대
 - *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 (늦은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 * 늦게 심사받는 대신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 (일반심사) 평균 16개월 이내(20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

-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일
 - 빠른 심사 : 시행 이후 우선심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늦은 심사 : 시행 이후 심사유예 신청(심사청구 후 6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하는 것부터 적용

■ 출원공개제도

-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 공개의 효과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 출원인은 출원공개(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공개,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서면으로 경고 가능
 - 보상금지급청구권 발생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시까지의 실시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발생
 -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민법 제766조 규정 준용)
- ※ 정보의 제공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당해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디자인·상표는 공개·공고 불문하고 정보제공 가능, 특허·실용신안은 2006.10.1부터 적용)
- ※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출원공고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 특허·실용신안의 국내우선권 주장(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제도는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특허법 제55조 제1항)
 -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특허 · 실용신안의 조약우선권 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이 그 당사국 등(제1국 출원)에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동일발명을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신규성 · 진보성 · 확대된 선원 · 선출원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국 출원일을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 상표 및 디자인 우선권 주장(상표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

-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제1국 출원)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제1국 출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제1국 출원일을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어 제1국 출원일을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경우
 - 상 표 : 선출원(법 제8조) 적용 시
 - 디자인 : 출원디자인의 공지 · 공용(법 제5조) 및 선출원(법 제16조) 적용 시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 후 3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 우선심사제도(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타 출원보다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 우선심사 신청대상
 -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등록출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 · 고안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것에 한함)
 - 대통령이 정하는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출원 공통 : 11개 분야

- 자기실시 또는 자기 실시 준비중인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벤처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방위산업에 관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공해방지에 관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수출촉진에 관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련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나. 특허출원 : 3개 분야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1개 분야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 우선심사 처리기간: 우선심사신청일부터 약 3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 통지

■ 우선심사제도(상표)

- 우선심사제도의 의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나(상표법 제13조제1항),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 우선심사 신청대상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심사 처리기간
우선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

■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과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은 월 단위
 -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까지 가능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제출원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 특허·실용신안의 거절이유통지와 관련한 지정기간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이며, 초과신청할 경우 소명서 제출 필요

〈지정기간연장에 대한 절차 흐름도〉



- 실용신안 기술평가(1999.7.1~2006.9.30), 출원하여 선등록된 건)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정정청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 상표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관련 지정기간
 - 상표 ·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며, 일괄하여 2회 신청 가능

■ 이용발명

- 의의 : 선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특허발명(A+a)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 보호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 가능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거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 불가능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 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로 구성
 - 비즈니스모델: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파라미터 영업, 경매, 역경매 등)
 - 프로세스모델: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 데이터모델: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 출원 및 작성
 -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 출원, 다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
 - 명세서 검색 웹 사이트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미국특허청	www.uspto.gov
유럽특허청	ep.espacenet.com
일본특허청	www.jpo.go.jp
IBM	www.patents.ibm.com

※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은 제외)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반환

■ 수수료반환 청구기간 연장

수수료 반환 청구를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기간이 연장됨



3. 200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알아보자

■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2008년 12월 26일 시행)

특허권, 상표권 침해 등의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 · 대리인에 대한 관리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법인인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함

■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2009년 1월 1일 시행)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신청서 제출시 인장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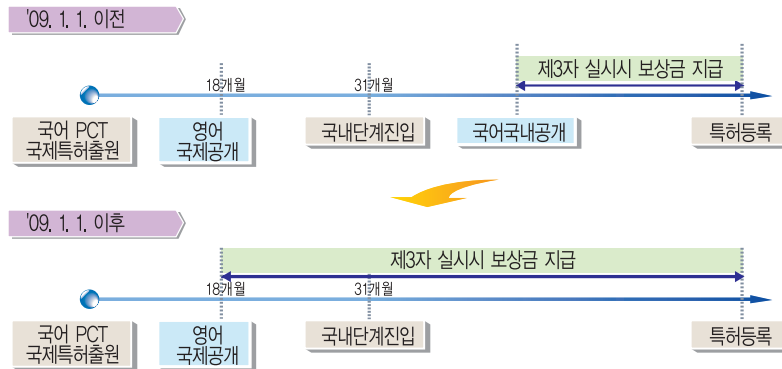
■ 지정상품 일부보정제도 도입(2009년 1월 1일 시행)

지정상품 보정시 보정할 필요가 없는 상품까지 기재하지 않고, 보정하고자 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보정 가능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2009년 1월 1일 이후 국어 국제출원 부터 적용)

- 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국제공개되고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서류도 국어로 제출이 가능
- 국어로 PCT 출원한 국제출원인은 의무적으로 1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던 국제 공개용 영어 번역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서류도 국어로 작성 가능
- 국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어로 국제공개가 있는 후부터 그 국제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인지세 통합징수 제도 시행(2009년 1월 1일 시행)

산업재산권 양도시에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붙이는 불편을 없애고자 인지세를 등록료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일괄납부

■ 실시권 등의 설정시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2009년 1월 1일 시행)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으로 등록의무자의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등록, 말소등록에 추가하여 실시권 등의 설정시에도 가능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대상의 확대(2009년 1월 30일 시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최대 6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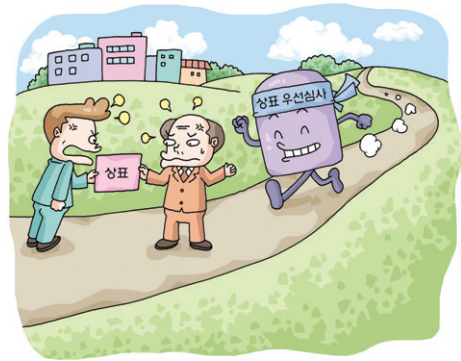
※ 재외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용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2009년 3월 27일 시행)

- 신청인이 잘못 납부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 비밀유지의 의무규정(제44조)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
- 양벌규정 단서 규정 신설(제49조 단서 신설)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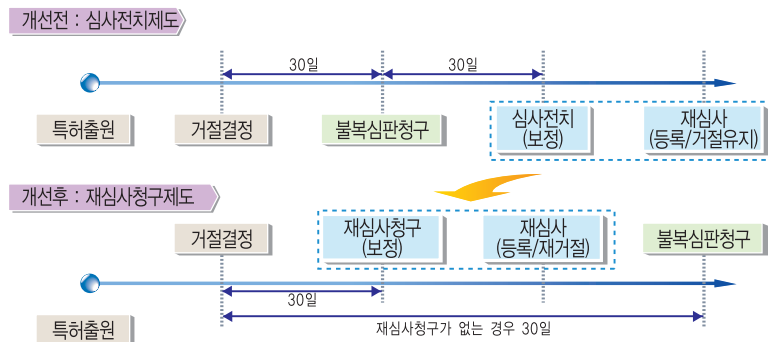
■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2009년 4월 1일 시행)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통상적인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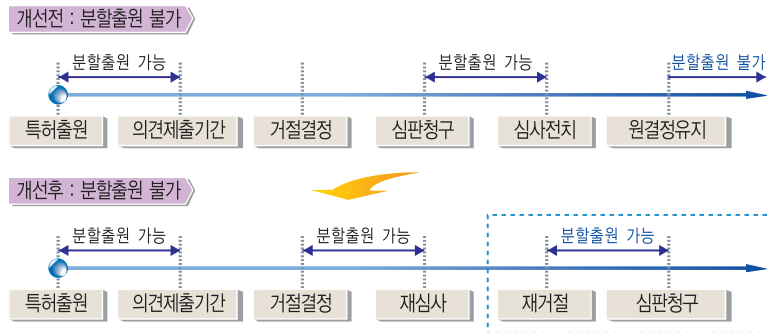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실용신안에도 적용)



IX.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2009년 7월 1일 시행)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외에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분할출원할 수 있음 (실용 신안에도 적용)



■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이후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는 것부터 적용)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정액제에서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

■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2009년 7월 1일 시행)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2009년 7월 1일 이후 보정하는 것부터)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보정 제한 요건 완화(실용 신안에도 적용)

■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실용 신안에도 적용)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1.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 설립배경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민원상담채널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민원상담 창구로 확대·개편함으로써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주요업무

- 전화상담 및 안내
출원, 등록, 심판, 국제출원(PCT, 마드리드) 절차 안내
- Expert System을 통한 전자출원 상담지원
'특허路'를 이용한 전자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의문사항을 고객과 상담원이 직접 컴퓨터에 온라인 접속하여 1:1 상담 처리
- 특허기술정보검색 및 활용
특허기술 정보검색 서비스 및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공개공보, 공고공보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고객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안내(엔젤콜) 서비스
 -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관련 절차 및 진행방법 안내
 - 공시송달/신규설 정등록/연차등록료납부/수수료반환/상표갱신출원/설 정등록료 과납/심사청구기간 만료/청구범위유예출원 대상

■ 전화상담 문의

- ☎ 1544-8080(전국어디서나)
- 홈페이지 : www.Kipo.go.kr → 특허고객콜센터



2.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 개념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상품과 기술개발을 지재권의 관점에서 예측하고, 핵심·원천 특허 등에 대한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지원

■ 추진 배경

- 핵심특허와 원천기술을 둘러싼 시장선점 경쟁 및 특허분쟁 격화
- 에너지·환경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수단의 확보
-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역조 개선의 필요

■ 주요내용

- 핵심·원천기술 발굴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방향 설정
-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시를 통한 특허획득·분쟁대응 전략 수립 지원
- 자체개발 외에 제휴 또는 매입을 포함한 최적의 특허획득 전략 제시
※ '08년 시범사업 : 조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소재, 임베디드SW 등 4개 분야

■ 향후 추진계획

- '09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18개 과제로사업 확대 추진
- 풍력발전, Fuel cell 그린카, 태양전지, LED 등 특허분야 17개 과제 및 프린터 등 디자인 분야 1개 과제
-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대일무역역조의 주원인인 첨단부품소재 분야의 기업의 핵심 원천특허 획득 전략 수립 지원
- 기업과 매칭 펀드 형식으로 85개 부문에 대한 지원 추진

■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 481-8633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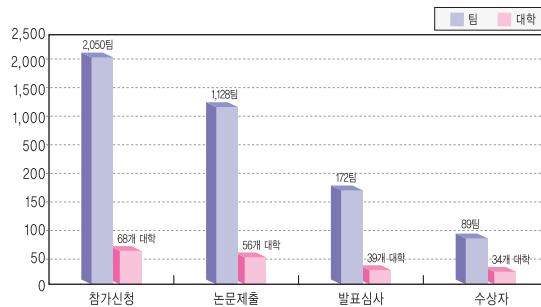
■ 추진목표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사업으로 추진)

■ 경진부문

- (특허 전략 수립부문) 특정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방향 수립
- (선행 기술 조사부문) 가상의 출원서, 발명요약서 등에 대한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청구범위를 작성·보정하여 특허가능성 판단

■ '08년 경진대회 참가현황



■ '08 후원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21개 기업

※ LG전자, 삼성중공업 등 14개 기업이 수상자에 취업인센티브 부여

■ 참가자격 및 문의

- 참가자격
 - (특허 전략 수립부문) 이공계 대학(원)생, 지도교수 1인, 팀(3인 이내) 단위로 참가
 - (선행 기술 조사부문) 이공계 대학(원)생, 개인자격으로 참가
- 참가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 481-5181
 - 한국공학한림원 ☎ 02) 6009-4003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02) 3459-2835
 - 홈페이지 : www.patent-universiade.or.kr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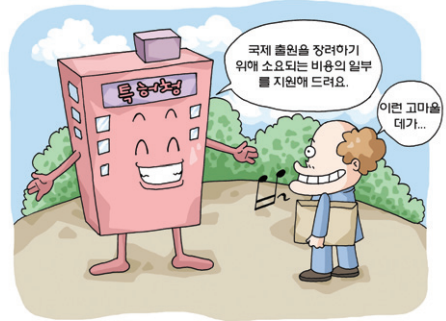
국제출원등록비용 지원

■ 사업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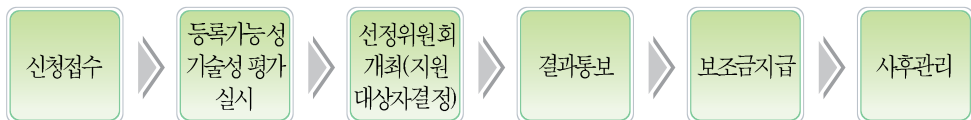
- 해외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송금한 국제출원비용으로 하며(선출원, 후지원), 동일인이 동일 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 건별로 700만원 한도로 지원
 - * PCT출원료, 지정국관납료, 번역료, 중간심사비용 및 국내·외대리인수수료 등
-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연간 5건 이내
 - ※ 해외각국(미국, 중국 등)특허청에서 발급된 출원번호로 신청건수를 산정함
 -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선정 심의기준 : 신청인의 자격/특허등록의 가능성/특허기술의 우수성/특허기술의 활용성 등

■ 국제출원 지원 접수·문의

- 연중 수시 접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5178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02) 3459-2792, 2843, 2846
- 홈페이지 : WWW.kipa.org/ 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 공고) 참조

민간 IP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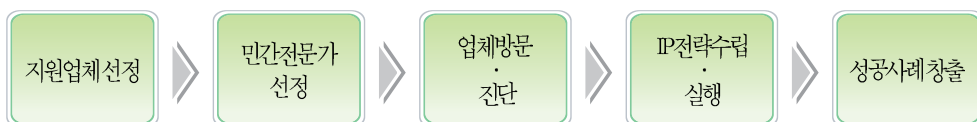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인식하지 못한 IP 경영 문제점 진단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프로젝트 매니저와 특허청 심사관의 공동 사전진단을 통한 연간 지원 계획 작성
-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 분석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전문가, 브랜드 및 디자인 전문가, 금융 및 회계 전문가 등 파견·지원
- 우수 지재산 획득,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분쟁지원 등 직접적인 IP활동 지원과 경영의 일환으로서 IP관리, 활용, 사내 시스템 구축, IP활동 내재화 등 지원
- 수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IP경영 내재화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지원

■ IP전문가 파견절차



■ IP전문가 파견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042) 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02) 3459-2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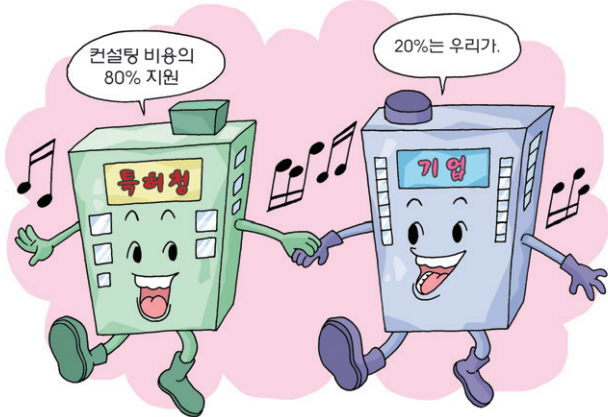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

■ 사업개요

시장현황과 특허현황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을 유효하게 지배할 수 있는 R&D 방향 설정 및 전략 특허를 설계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비용(특허·논문·시장성·사업성 등) 지원
- 컨설팅 비용의 80%를 특허청이 지원하고 기업은 20%를 부담

■ IP-R&D 선정절차



■ IP-R&D 신청대상 및 문의

- 신청대상 : 첨단 부품·소재 개발분야 중소·중견기업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 481-818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02) 2189-2640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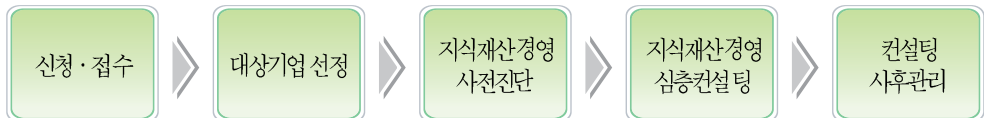
■ 사업개요

특허청 심사관(전담인력)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분야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특허경영 컨설팅
특허경영 일반, 출원 및 관리 전략, 특허 정보활용 방안, 특허분쟁 대응방안 등
-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컨설팅
브랜드 및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 상표분석 및 디자인 맵 결과물을 활용한 권리화방안, 전략적 활용방안, 분쟁대응방안 등
- IP포털(www.ipp.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절차



■ 신청대상 및 문의

- 신청대상
 - 창조적이고 혁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특허스타기업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042) 481-5888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02) 3459-2821
 - 지식재산경영포털 홈페이지 <http://ipp.or.kr>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지역 지식재산창출 사업

■ 사업개요

전국 16개 시도에 분포한 14개 광역센터와 16개 지역센터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원내용

- 출원상담, 특허정보검색, 특허기술 사업화 및 이전·거래 지원제도 상담 등을 One-stop으로 해결
-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세미나, 포럼) 및 교육과정 운영
- 지역발명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지식센터 현황: 별첨2(p115) 참조

■ 지원대상 및 문의

- 지원대상: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생산자(가공자)단체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042) 481-8452
 - 한국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02) 3459-2826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k.org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 사업개요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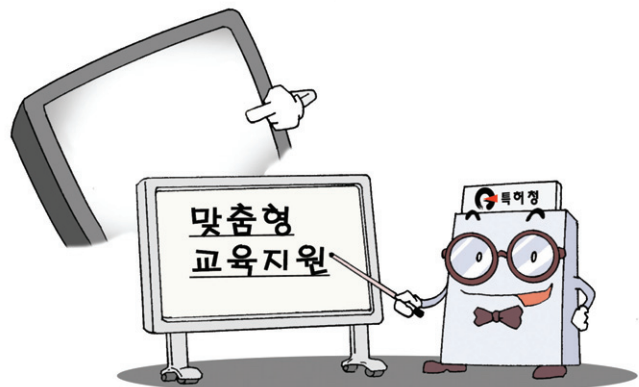
- 자기진단을 통해 입문·중급·고급과정 등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 기업 편의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과 찾아가는 방문 교육
- 기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실무형 교육

■ 방문 및 순회교육

- 기업 방문교육
 - 기업 규모 및 기술분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단체 방문교육
 -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지재권 교육서비스
- 지역 순회교육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교육서비스

■ 교육 신청대상 및 문의

- 신청대상: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교육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의 기업
- 문 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 481-8100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비영어권 수출기업의 브랜드 개발 지원

■ 사업개요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현지어 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
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
기업이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 1개 기업 당 5천만원 (국고 보조 80%, 기업 부담 20%)
-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애칭상표」를
추천 · 분양
- 중소기업청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에 추천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 해외 브랜드 지원 신청대상 및 문의

- 신청대상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042) 481-845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02) 3459-2821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3.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안내

■ 사업개요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 지원, 기술·경영지도, 특허기술 거래·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안내

■ 사업화지원 대상기술

- 특허권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사업화자금 등 자금 지원과 경영·기술지원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특허기술 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 기술개발이 필요한 특허출원기술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판매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절차

- 과제신청
-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지원기관에 신청서 제출
- 사업화 지원
- 각 지원기관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지원 실시
- 사업화 지원기관: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

■ 자금지원 안내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8180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02) 3459-2844~46, 288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 사업개요

우수특허기술(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작품 제작비용이 부족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시작품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시작품제작 지원내용

-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5,000만원 한도 지원
- 시작품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

■ 지원절차



■ 시작품제작 지원대상 및 문의

- 지원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발명(고안, 디자인)을 보유한 자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5178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02) 3459-2844, 2847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 사업개요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하여 평가된 특허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평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의 70%(본인부담금 30%) 범위 이내에서 신청인당 연간 총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평가비용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자로 신청일 현재 특허등록,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3자로 개인 및 중소기업자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기술거래기관

■ 평가비용 접수·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5178
-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 3459-2884~288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WWW.kipa.org/FAMILY SITE/발명의 평가지원 참조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특허기술 거래시장 개설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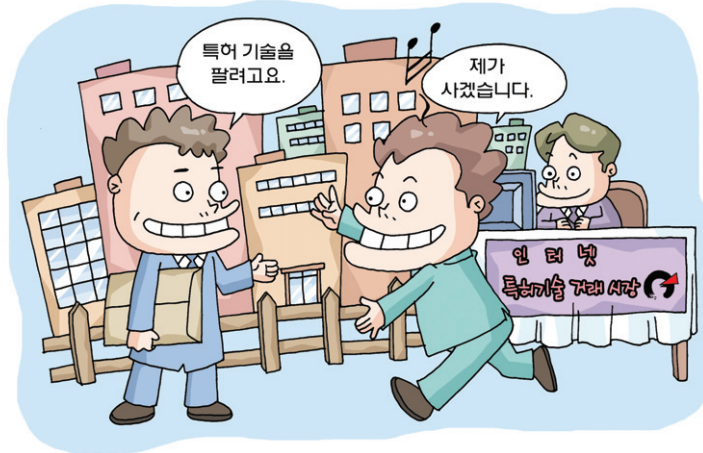
특허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발명가, 기업)과 사고자 하는 사람(기업, 자본가)이 특허기술의 설명, 상담을 통해 기술을 매매 실시하여 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인터넷 특허기술 거래시장 운용

■ 지원내용

- 이전대상 특허기술 및 사업화 성공사례 기술 연중 전시
- 전시대상기술의 전시패널, 리플렛, 동영상 시뮬레이션 및 평가서 지원
- 전문유통상담관을 통한 특허기술이전 계약 및 협상 지원
- 연중 투자설명회 개최 및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 특허거래정보센터 장소 및 문의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KIPS)3층
-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 481-8183
 - 한국특허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 3459-2886~2889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 사업개요

특허기술의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기술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에서 특허기술거래 전문 포털사이트를 운영

■ 지원내용

- Cyber상에서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무료로 지원
-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특허기술거래에 참여유도



■ 인터넷 기술장터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 481-8183
-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 3459-2897
- 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 www.ipmart.or.kr → IP-Mart 안내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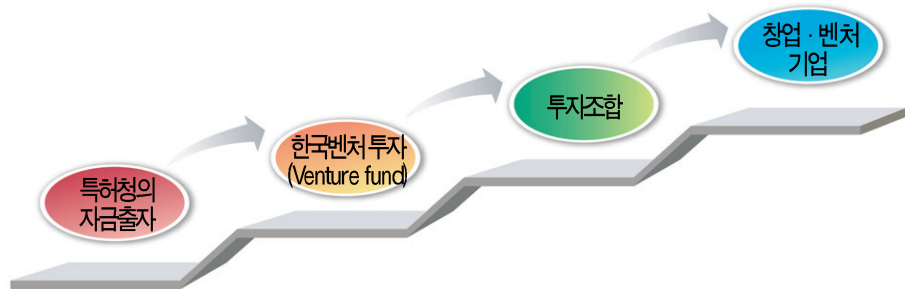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개요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의 부족으로 특허기술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안정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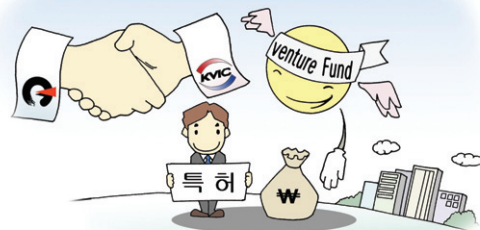
■ 특허청이 마련한 모태펀드란?

특허청이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한국벤처투자(주)가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창업·벤처 기업 등이 펀드에 의해 투자받도록 자금을 조성



■ 모태펀드 신청대상 및 문의

- 신청대상
'특허 등록, 출원 중인 기업' 이거나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발명, 특허권 등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면서 이의 권리화, 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명·특허관리회사(Invention Capital, IC)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5171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2팀
☎ 02) 215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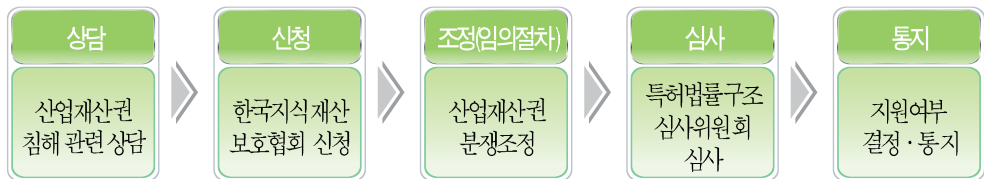
4.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법률구조사업

■ 사업개요

산업재산권 침해 시 특허법률상담, 심판·소송대리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

■ 특허법률구조 절차



■ 특허법률구조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재학생에 한함, 대학원생 제외) 및 만19세 미만자
- 소기업 및 영세 개인발명가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중인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심판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심결취소소송의 경우 400만원)까지 지원
- 승소 시 지원금액의 5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과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

■ 특허법률구조 신청·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 481-5074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02) 3459-2917

X.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운영개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변리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가의 변리비용으로 인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지원

■ 상담인력운영

- 한국지식재산센터(17층)에 공익변리사 8명이 상주하여 상담
- 공익변리사가 지역순회 상담
 - 등록변리사가 없는 지역, 상담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순회 상담 실시

■ 상담범위

- 선행기술 검색 및 활용
-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순회 상담

■ 상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재학생에 한함, 대학원생 제외) 및 만 19세 미만자

■ 산업재산권 무료상담 이용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 481-5074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 553-5861, 5863~4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 운영개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지재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애로상담, 법률자문, 심판 및 소송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

■ 지원내용

-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의한 1차 상담 실시
 -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의뢰하여 무료법률상담 실시
- 해외 지재권 침해 심판 및 소송비 지원

구 분	지 원 금 액
권리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	1건당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심판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조사에 필요한 침해조사비용 지원	1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소요비용의 70%

-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도 및 홍보 활동
 - 국내 주요도시 및 해외 주요 침해국 순회 보호설명회
 - 주요 지재권 침해발생국의 지재권제도, 구제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가별 해외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발간 · 배포
 - 인터넷에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지재권 동향, 침해사례 등 주요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실시

■ 해외 침해 · 분쟁 문의

- 수신자부담 전화 및 팩스 운영 : ☎ 080-567-0001, FAX : 042) 472-3465
-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상담접수 : <http://ippc.kipo.go.kr>
- 방문 및 우편접수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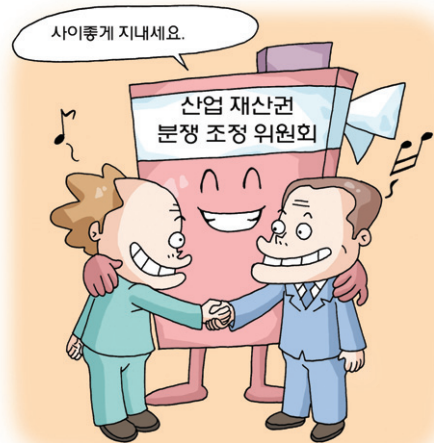


5.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 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없음
- 소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 년이 걸릴 분쟁이 수 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 분쟁조정신청 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은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신청대상이 되는 분쟁은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 전체

■ 분쟁조정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 481-5074
- 조정신청서 팩스 신청가능 FAX : 042) 472-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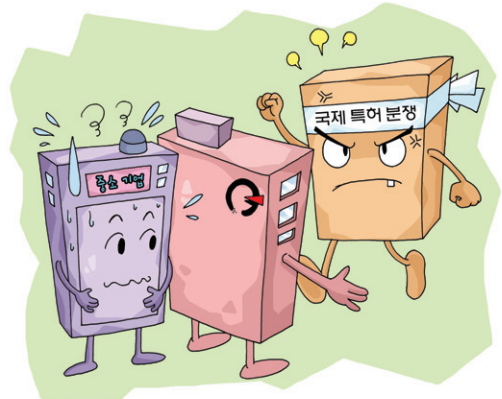
국제 특허분쟁지원사업

■ 사업개요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지원을 통한 지재권 경쟁력 제고

■ 특허분쟁 단계별지원

- 분쟁초기 협상대응 지원
 - 비침해 또는 무효화 주장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유사특허· 문헌) 및 법률 쟁점 발굴
 - 국가별/기술별로 특허협상 전문가 Pool의 구축·운영을 통한 라이선싱 협상 지원
- 대응특허발굴 지원
 - 특허협상 품목별 협의체 기업들의 보유 기술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동실시를 조건으로 국내외 출원·등록 지원
 -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회피기술 설계 추진
- 가압류·가처분·국경조치 대응 지원
 - 수출기업이 판매국가에서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당할 경우 현지 대리인 등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지원
 - 수출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하여 국경단계에서 통관보류, 수출·입 금지를 당할 경우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신청대상 및 지원문의

- 신청대상: 국제 특허분쟁을 제기 당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80-567-0001, 042) 481-5992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02) 3459-2917~2918

XI.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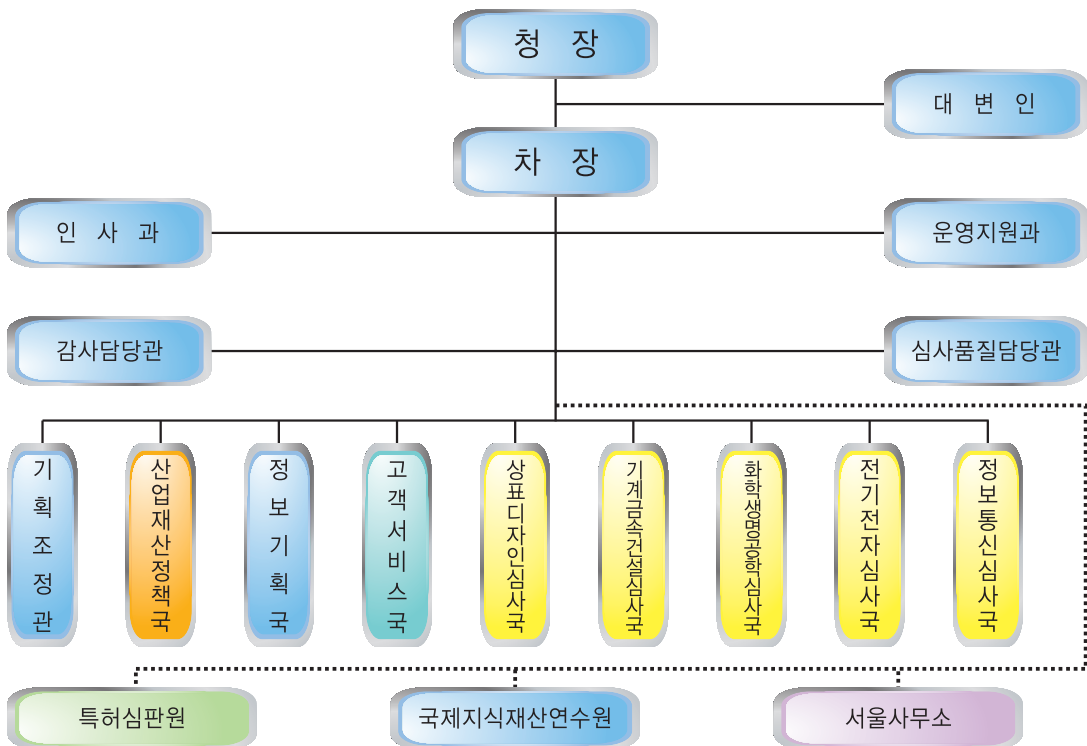


1. 특허청 (<http://www.kipo.go.kr>)

■ 특허청이 하는 업무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산업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 활용 및 보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심사·심판

■ 조 직(2009. 3. 1 현재)



■ 주소 및 대표전화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 대표전화 : ☎ 042) 481-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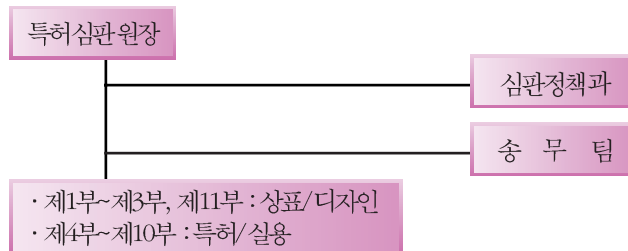
2. 특허심판원 (<http://www.kipo.go.kr/ipt>)

■ 설립목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함은 물론 특허법원 소송수행업무 및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전문심판기관으로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설립(1998년)

■ 특허심판원에서 하는 업무와 심판원 구성

- 심판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결정·승인 및 심결문 작성 등의 심판업무
- 심판처리계획 수립, 심·판결례 조사·연구분석, 심사·심판관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소송수행업무
- 특허심판원장 아래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와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으로 구성



■ 심판 문의

- 주 소 : 우) 301-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 문 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 481-5918

XI.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

■ 설립목적

특허청 소속의 심사·심판관, 변리사시험 합격자, 기업체·연구소 임직원 및 R&D종사자, 학생 등 내국민과 아·태지역 개도국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저변확대로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 대처(1987년 설립)

■ 연수원에서 하는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 민간부문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 발명지도자 및 학생발명인재양성 교육
- 지식재산권 교육관련 국제협력 및 외국공무원 교육
- 사이버교육 및 연구 활동

■ 교육문의

- 주 소 : 우) 305-703 대전 유성구 가정동 33
- 문 의 : ☎ 042) 601-4458~9, FAX : 042) 862-5524



4. 특허청 서울사무소

■ 설립목적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인들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를 설립 운영

■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출원·등록·심판서류 등 접수,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복사서류 발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

■ 주소 및 대표전화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4~5층
- 대표전화 : ☎ 02) 568-8155



5.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 설립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업무

-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기반 조성사업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사업
- 특허기술제품 판로개척사업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발명진흥사업

■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내
- 문 의 : ☎ 02) 3459-2800, FAX : 02) 3459-2999



6.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기여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하는 업무

-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및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정보조사
- 국내·외 특허정보 수집, 처리, 가공

■ 특허정보검색 문의

- 주 소 : 우) 121-8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 문 의 : ☎ 02) 6915-6000, FAX : 02) 6915-6009

XI.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 설립목적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주요선진국의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있는 제언을 위해 설립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하는 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정부 ·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 기업에게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 업무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내
- 문 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02) 2189-2600, FAX : 02) 2189-2699



8.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 설립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변리사)들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 대한변리사회에서 하는 업무

- 변리사의 위상제고와 현안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사업 및 홍보사업
- 국내 · 외 지식재산관련 제도개선 및 자료발간
- 국고보조금 사업의 신속 · 정확한 수행을 통한 공익봉사체계구축

■ 변리업무 문의

- 주 소 : 우) 137-8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당길 48번지
- 문 의 : ☎ 02) 3486-3486, FAX : 02) 3486-3511



9. 한국지식재산협의회 (<http://www.kinpa.or.kr/>)

■ 설립목적

각 업종 및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모여 지식재산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공동연구등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협의회

■ 한국지식재산협의회에서 하는 업무

- 특허청 등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제언
- 지식재산 경영, 특허분쟁, 특허정보분석 등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
- 국제적인 지식재산 이슈에 조기대응
-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같은 공통의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
- 회원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내
- 문 의 : ☎ 02) 3459-2804



1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및 업종별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지재권 보호사업 관련 정책 제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하는 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제공
-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등 지재권 보호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지원

■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7층
- 문 의 : ☎ 02) 3459-2917, FAX : 02) 3459-2919

XI.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11. 한국학교발명협회 (<http://www.kasi.org/>)

■ 설립목적

21세기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

■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하는 업무

- 전국발명교실 설치 · 운영 및 발명교육자료 개발/보급
- 발명지도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 대한민국학생 창의력올림피아드
- 사이버 발명교육으로 전 국민의 발명의식 전환

■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문 의 : ☎ 02) 569-6584~6, FAX: 02) 569-6680



12.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 설립목적

한국여성의 발명 활동을 촉진 · 장려하고 여성 발명가의 권익 증진 및 홍보

■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하는 업무

-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 구축
-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 발굴 · 육성
-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

■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문 의 : ☎ 02) 538-2710, FAX: 02) 538-2714

산업재산권의

www.kipo.go.kr

손쉬운 이용

〈별첨 1〉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FAQ)

〈별첨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별첨 3〉 산업재산권 서류제출기간

공 통 문 의

Q.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p 11 참조)

A.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사용자등록신청 → 서비스신청 및 조회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 할 수 있나요?

A.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등록원부 교부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제증명발급 → 제증명발급신청 → 등록원부 교부신청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비밀번호는 특허청 담당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에 기재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Q. 민원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 코너에서 특허관련 민원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허관련 수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p 45 참조)

A.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수수료정보 코너에서 특허관련 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출원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p 33 참조)

A.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출원인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 60 참조)

A. 출원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중소기업 감면서류가 어떻게 되나요?(p58 참조)

A. 중소기업 감면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특허 출원한 후 다음날까지 수수료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특허수수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식심사단계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상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보정기간내에 미납 수수료 납부하면 됩니다.

출원 관련 문의

Q. 특허출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공개되거나 등록된 건이 없는지 검색 한 후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필요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p16, p61 참조)

A.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여 출원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과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Q.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 특허출원을 반드시 대리인(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Q.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상표 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p22 참조)

A. 등록하려는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검색을하여 미리 확인을 한 후, 상표등록출원서, 견본(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가로세로 8cm*8cm 정사각형), 출원수수료 1상품류구분마다 66,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상표등록요건은무엇인가요?

A.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Q. 특허출원하면 출원공개가 언제되나요?(p17 참조)

A.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Q. 상표출원 후보정의 범위는어떻게 됩니까?

A.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원공고 결정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 할 수 있고,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거절 이유나 이의신청 이유 등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Q.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p26 참조)

A.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제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관련 문의

Q. 특허 심사청구기간 및 청구료는 어떻게 됩니까?(p46, p66 참조)

A.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출원순서에 관계 없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면 되고, 심사청구료는 기본료130,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40,000원 가산료가 있습니다.

Q. 특허출원건에 대해서 우선심사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69 참조)

A. 우선심사 신청하려면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심사 신청료는 매건당 167,000원입니다.

Q. 심사청구취하가 가능한가요?

A. 특허 출원의 출원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Q.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A. 2006. 10.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하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허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특허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명세서, 도면 등을 정정·추가·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Q. 출원이 벤처기업가와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출원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Q. 디자인심사등록출원 후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A.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상표출원건에 대해서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가 무엇인가요?(p22 참조)

A.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Q.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p22 참조)

A.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5조).

Q.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p71 참조)

A.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문의

Q. 신규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p 25 참조)

A.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등록)료 납부서, 감면 사항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로 특허청 영수증에 납부자번호 기재해서 납부서 제출한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하면 됩니다.

Q.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A. 특허등록번호는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권리이전등록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p 24 참조)

A. 등록된 건에 대해서 권리이전 시 구비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말소등록신청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A. 말소등록신청시 구비서류는 말소등록신청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등록권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권리이전 시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A.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도장이어야 양도증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Q.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p26 참조)

A.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 ·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A.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는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이고 국가 이외에는 면제 ·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Q. 산업재산권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특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권리이전 후에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새로운 권리자명으로 등록증이 재발급 되는지요?

A. 등록증을 재교부신청 하는 경우에 현재의 권리자 명의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006년 5월 1일 시행)

Q. 등록 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07.12.31 이전 등록된 건은 등록 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를 2008.1.1 이후 등록된 건은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 판 관 련 문 의

Q. 심판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30 참조)

A.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Q.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p30 참조)

A.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니까?(p30 참조)

A.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Q. 심판관련 청구서(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보정서(심판청구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p29 참조)

A.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Q. 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까?

A.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Q.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p29 참조)

A.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사 결과 새로이 발견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허 심판청구시 심판청구비용이 얼마입니까?(p50 참조)

A. 심판청구료의 경우에 서면으로 제출시 특허, 실용신안의 기본료는 170,000원(보정각하불복 심판 220,000원)이고,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의 가산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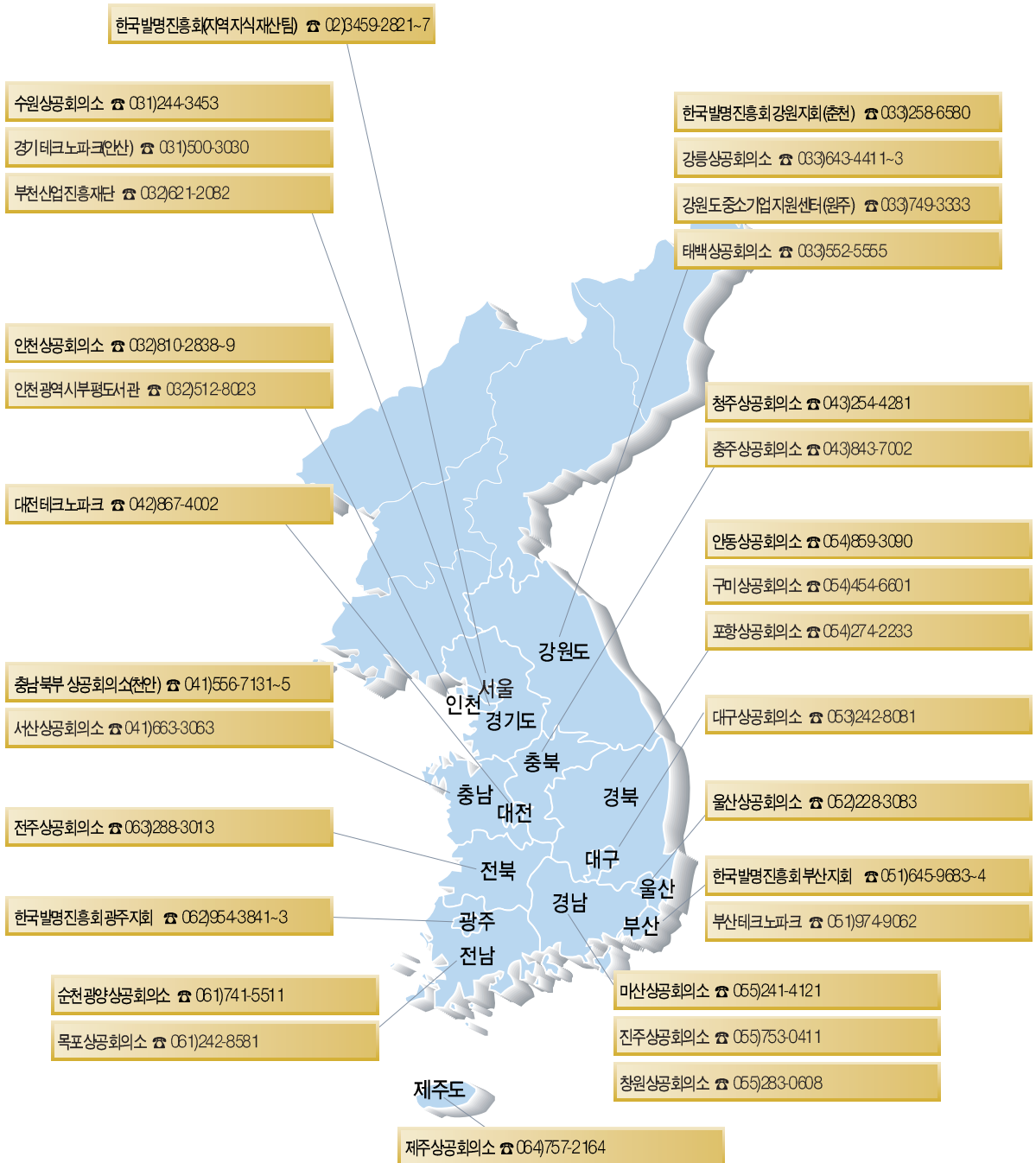
Q.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p32 참조)

A.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심판 청구전에 대해서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p 32 참조)

A.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심판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구 분	권 리	제 출 기 간	관련 법조문	특 례
출원심사 청구	특허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 §59②	
		원출원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 §59③ (구 특 §59③)	
	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실 §12②	06.10.1 이후 출원에 적용
		원출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실 §12③	
보정기간	특허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일 부터 30일 이내	특 §47	2001. 7. 1 이후 특허 출원
	실용신안	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 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지정기간) 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실 §11	2006. 10. 1 이후 실용 신안등록출원
	디자인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26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시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디 §18⑤	
	상표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상표결정서의 송달 전에는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 §70조의2)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상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23② · 상 §45② · 상 §46의4② · 상 §48②)	상 §14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내(지정기간)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 부터 30일 이내	상 §15 상 §23② · 상 §48② 상 §27① 상 §70의2	
	분할출원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	특 §52	
분할출원	특허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30일 이내)할 수 있는 기간	특 §52①2	2009. 7. 1 이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		2006. 10. 1 이후 실용 신안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보정기간내	디 §19③	
	상표	상표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	상 §18①	

구 분	권 리	제 출 기 간	관련 법조문	특 례
변경출원	특허 ↓ 실용신안	실용신안(특허)등록출원을 특허(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특허) 등록출원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특§53 실§10	선출원이 06.10.1. 이후출원에 적용
	상표 ↓ 서비스표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	상§19④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인정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무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게 된날(확정된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특§34 실§11 디§14	
	특허/ 실용신안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이며,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특§35 실§11	
	디자인	무권리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디§15	
출원공개	특허/ 실용신안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다만,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한 때	특§64 실§15	
	디자인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 송달 전 출원인이 공개신청한 때	디§23의2	
조기공개 신청취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특칙§44③ 실칙§17① 디칙§6의2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특허/ 실용신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특§54② 실§11	
	디자인/ 상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	디§23② 상§20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특허/ 실용신안	우선권 주장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특§54④ 실§11	
	디자인/ 상표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	디§23④ 상§20④	
국내우선권 주장	특허/ 실용신안	국내우선권주장 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특§55① 실§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	특§56① 실§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월 이내	특§56② 실§11	

구 분	권 리	제 출 기 간	관련 법조문	특 례
공지예외 주장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시 특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출원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특 §30① 실 §5① 디 §8①	
	상표	박람회 등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출품한 날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4) 조약 당사국 영역 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날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상 §21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특 §30② 실 §5② 디 §8② 상 §21	
등록료 납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상납부 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정상납부금액의 2배 납부)	특 §79 실 §16 특 §81 실 §20	실용신안은 06.10.1 이후출원에 적용
	상표	①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⑦) ②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1회 30일 연장	상 §35	
이의신청 제기	특허/ 디자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구 특 §69① 디 §29①	특허는 01.7.1 이후출원 ~07.6.30 이전설정 등록된 건 적용
	상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상 §25	
이의신청 가제이유 및 증거 보정기간	특허/ 상표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구 특 §70 상 §26	
	디자인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디 §29③	
재심사 청구	특허/ 실용신안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특 §180①	09.7.1 이후 적용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특 §180③	
존속기간	특허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특 §88	
	실용신안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10년	실 §22	
	디자인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디 §40	
	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갱신출원으로 10년씩 연장 가능	상 §42	

산업재산권 서류제출기간

구 분	권 리	제 출 기 간	관련 법조문	특 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특허	연장신청제도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 3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1987. 7. 1 ~ 1990. 8. 31 이전특허출원
		연장출원제도 특§89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	특§90②	1990. 9. 1 이후 특허출원
상표권 갱신 등록 출원	상표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	상§43	
절차의무효 처분 취소 청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정 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인정된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지정된 기간(보정기간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16② 실§3 디§4 상§5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최초의 공시송달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	특§219③ 실§44 디§81 상§92	
특허료 보전기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특§81의2 실§20 디§33의2 상§36의2	
거절결정 (보정각하) 불복심판 청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132의3 실§33 디§67 상§70의2	
	디자인 /상표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디67의2 상70의3	
	특허/ 실용신안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간 연장 가능	특§15① 실§44	2009. 7. 1 이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비밀디자인 청구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설정등록료 납부일까지	디§13②	
상표권의 소멸	상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64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등기일 다음날에 소멸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라든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 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	상§64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 상품분류전환등록시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은 분류 전환등록일에 소멸 분류 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	상§64의2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특§84③ 실§20 디§36③ 상§38③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행일 2009년 3월

발행인 특허청장 고정식

발행처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Tel:(042)481-5953

인 쇄 금강인쇄정보
Tel:(042)526-0311

ISBN 978-89-6199-202-2 13500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특허청**이 앞장서겠습니다

특허청 부조리신고센터 Tel_042)481-5033~6 Fax_042)472-3456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고충민원 창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ISBN 978-89-6199-202-2 13500